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CEO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문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85년 창사 이래 국내 에너지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LPG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려온 SK 가스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업을 다각화해 왔으며,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Eco Energy Total Solution 기업으로 변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성장에 수반하여 더욱 높아지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공정거래질서 준수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올해 SK 가스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를 계기로 지난 2002년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대정신의 변화에 맞게 한층 강화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해진 고객, 주주 및 사업 파트너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SK 가스의 CEO로서 공정거래 자율 준수에 대한 실천 의지를 선언하여 당사의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저는 임직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임직원 여러분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열사와의 거래나 협력회사와의 거래에서는 더욱 엄격한 사전 검토 절차를 통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유의 사항과 임직원으로서의 행동 지침과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당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규정을 숙지하여,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실시하는 공정거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십시오.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들이 업계의 모범이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회사를 대표하는 CEO로서 여러분들께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전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저의 선언을 계기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실천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마음 속에 늘 명심하시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립함으로써 SK 가스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K 가스 대표이사

윤 병 석



SK 가스 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

우리 SK 가스 주식회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LPG 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공정거래의 자율준수가 경영활동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이를 기업경영의 최고 가치 중 하나로 삼는다.

하나, 우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경영활동에 있어서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업계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솔선수범한다.

SK 가스(주) 임직원 일동



공정거래문제 처리안내

✓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 이정우 법무실장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 전화번호 : 02-6200-8550
 - E-Mail : jungwoolee@sk.com

✓ **공정거래 담당부서**

- 법무그룹
- PL : 정광용 PL
- 담당자: 이훈영/이성국 Manager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 전화번호 : 02-6200-8428(5)
 - E-Mail : hunyoung.lee@sk.com / sungguck.lee@sk.com

☞ 공정거래문제점 발견 시 즉시 위의 주소로 신고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목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I. 공정거래법 개요
- II.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 III. 기업결합의 제한 및 신고
- IV.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 V. 경제력 집중의 억제
- VI.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VII.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VIII. 기 타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기타 법령(하도급법 / 약관규제법 / 표시광고법)

- I.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I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III.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I.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 II.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요

1. 공정거래법 도입 경위

- **물가안정법**: '72 년 원유파동으로 물가급등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73), 최고 가격지정 등의 물가대책 외에 판매거절금지 등의 공정거래 질서확립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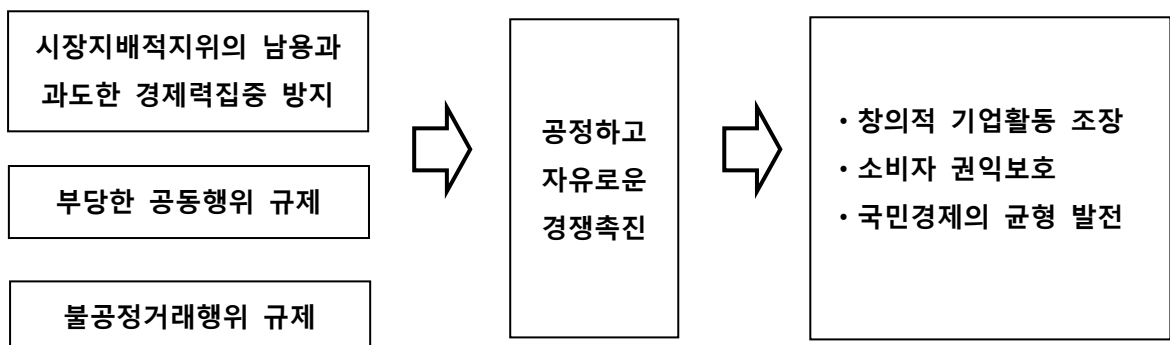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종전의 물가안정법중 공정거래관련 부분이 대폭 보완되어 다시 제정('76),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 및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제도 등이 도입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가격승인제로 인한 가격기능의 왜곡, 경제력집중 문제의 대두 등을 감안하여 경제운용의 기초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공정거래분야를 중심으로 제정('81)

2.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 1 조)

-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경제의 기본질서 유지』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의 하나임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통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도모 가능





3. 공정거래제도의 주요내용

-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구조의 개선』과 『불공정한 거래행태의 개선』이라는 2 부분으로 구성

시장구조의 개선	거래행태의 개선
-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제도 개선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장기 독과점시장에 대한 경쟁촉진 시책의 수립·추진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 계열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자/손자회사의 단계별 행위제한 규정 -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이내, 자회사 지분율 50% 미만 보유 금지, 비계열사 지분율 5% 초과 보유 금지 등 -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50% 미만 보유 금지, 비계열사 지분 보유 금지 - (손자회사) 국내계열사 지분소유 금지(단, 계열사 지분 100% 소유한 경우는 가능) - 금융·비금융 자회사 동시 소유금지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채무보증을 사전해소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의 금지 - 경제력집중의 억제 · 상호출자제한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 상호출자 금지 및 순환출자 금지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부당지원행위 금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가격남용, 출고조절 · 다른 사업자의 사업방해 · 신규 사업자의 진입방해 ·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 ·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조건의 결정 · 거래지역 또는 상대방의 제한 · 생산·출고, 거래 등의 제한 · 시설투자 제한 · 상품·용역의 종류·규격 제한 · 공동회사 설립 · 입찰 담합 · 사업활동방해 · 경쟁제한적인 정보교환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 사업자 수 제한 ·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 구성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요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일반) 거래거절,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방해 등 · (특수)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등 별도 고시에서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법¹ 5 조)

1. 의미

○ 시장지배적 사업자

-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 (법 2 조 3 호).

○ 지위남용행위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판매량 등을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시장진입 방해 등

2.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기준 및 추정

○ 판단기준

- 해당사업자의 시장점유율
- 해당 거래분야에서의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 경쟁사업자가 상대적으로 가지는 규모
-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법 6 조)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또는,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이 75% 이상인 사업자 (다만,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3. 남용행위의 유형

구 분	내 용
가격남용	가격이나 용역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출고조절	상품의 판매(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¹ 이하 공정거래법은 '법'이라 약칭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영'으로 약칭합니다.



사업활동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신규진입방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법 5 조 1 항 1 호)

○ 개념

-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함)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

○ 판단기준

- "상품의 용역이나 대가"는 원칙적으로 현금결제에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관행상 다른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적용
- "수급의 변동"은 당해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의 변동을 말하며,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상당기간 동안 안정적이었는지 여부도 고려
- "공급에 필요한 비용"은 가격결정과 관련 있는 재료비, 인건비, 제조경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영업 외 비용 등을 의미
- "동종 또는 유사업종"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분야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해당 거래분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 또는 인접시장'을 포함
- 비용이 "통상적인 수준"인지는 각 비용항목과 전체 비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사업자의 재무상황, 비용의 변동추세, 타사업자의 유사항목 비용지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는 최근 상품의 가격변동 및 수급상황, 생산자물가지수, 사업자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인상률,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관련 사례

제과 3 사 사례	
행위 사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제과 3 사(점유율 78.1%)는 각자 자신이 생산·판매하는 비스킷류 제품의 용량을 감소시키면서도 가격은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
공정위 판단	시장점유율에 비추어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고, 각 제품의 가격인상률이 원가상승요인에 비하여 더 많이 인상되었다는 점, 각 제품별 변동 전 용량의 제품 판매기간 중의 도매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위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해당(공정위 1992. 1. 15.자 의결 제 92-1~3 호)

BC 카드 등 신용카드업자들 사례	
행위 사실	BC 카드 및 12 개 회원은행, 엘지캐피탈, 삼성카드는 카드회원에게 적용되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을 인상하거나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공정위 판단	· BC 카드 및 12 개 회원은행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엘지캐피탈 및 삼성카드를 포함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 · 영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인 자금조달금리, 연체율 및 대손율 등 원가요인이 상당 기간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 등을 인상 또는 유지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함(공정위 2001. 3. 28.자 의결 제 2001-040 호)
대법원 판단	비씨 카드와 그 회원사인 은행들을 통틀어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없어 공정위 판결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 인정(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 두 6283 판결)

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법 5 조 1 항 2 호)

○ 개념

-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행위



○ 판단기준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영 9 조 2 항 1 호)]

- “최근의 추세”는 상당기간 동안의 공급량을 제품별, 지역별, 거래처별, 계절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수급의 변동요인 및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을 감안함
-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킨다”함은 당해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말함

이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되, 직영대리점이나 판매회사의 재고량, 출하량을 합산함

- (가) 공급량 감소 후 일정기간 내 동 품목의 가격인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공급량 감소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동 품목에 대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증가여부
- (다) 공급량 감소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출하 여부
- (라) 원재료를 생산하는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자신은 동 원재료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면서, 타사업자 대해서는 동 원재료 공급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영 9 조 2 항 2 호)]

-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다” 함은 주로 성수기에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의 각 유통과정에서 품귀현상이 있음을 말함



○ 관련 사례

제일제당 사례	
행위 사실	제일제당은 1997, 1998 년도 대두유 품목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1997. 12. 8.부터 1997. 12. 20.까지의 기간 중 평소에 비해 대두유 제품의 출고량을 감소(일일운영량 25%~50% 축소 운영, 일일평균출고량의 65.6%~83.6%만 출고 등)시키고 재고량을 조정, 통제함
공정위 판단	같은 시기 대두유 수요가 급증한 상태였음에도 피심인의 대두유 출고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반면 대두유 재고량은 계속 증가한 점, 출고조절기간 중 피심인이 대두유 출고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심인의 행위는 출고조절기간 중 대두유 출고량을 줄이는 대신 이를 설날 수요에 대비한 선물세트 생산에 충당함으로써 설날 전 성수기에 가격인상요인이 최종 반영된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한 영업전략으로 보이는 점, 피심인의 매출실적과 경상이익률이 다른 달에 비해 월등히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장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대두유 제품의 출고량을 부당하게 조절한 행위에 해당함(공정위 1998. 11. 4.자 의결 제 98-251 호)
대법원 판단	원고(제일제당)가 출고를 다소 감소시킨 점은 인정되나, (1) 원고가 출고조절기간 동안 감소시킨 생산·출고량을 피고(공정위)가 비교기간으로 설정한 1997. 12. 1.부터 12. 6.까지 사이의 생산·출고량과 비교하여 보아도 그 감소 정도가 현저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비교기간 자체가 이미 외환위기 등으로 인하여 대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던 시점의 것이므로 비교기준으로서 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2) 또, 출고조절기간 당시 외환위기라는 비상상황을 맞이하여 대두의 수급전망이 불투명하였는데도, 원고의 대두 보유량은 1달 정도의 사용량에 불과하였고, 당시의 가수요에 따라 대두유를 공급하고 나면 재고가 거의 소진될 형편이어서, 그 다음해 1 월의 설 명절을 전후한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공급부족 파동에 직면할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출고량을 다소 조절한 것은 사업자로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합리적인 기업경영행위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대두유에 대한 가수요는 물가 불안 심리에 따른 일부 유통업자의 매점매석행위와 소비자의 사재기에 기인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손실의 확대를 감수하면서까지 생산·출고를 증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1998 년 이후 소폭의 흑자를 보았으나 이는 설 명절 수요증가에 의한 매출액의 증대와 환율 상승에 따른 대두유의 가격인상에 기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적법함(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 두 9991 판결)



남양유업 사례	
행위 사실	조제분유 품목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고시된 남양유업은 수도권지역에 조제분유 품귀현상이 발생하였던 1997. 12. 26.~31 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기간') 동안, ① 수색창고의 조제분유 출고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8%, 1997. 12. 1.~25.까지 사이의 5 일 단위 평균 출고량의 15.4%로 감소시킨 반면, ② 수색창고의 조제분유 재고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6% 증가시켰고, ③ 서울지역 4 개 지점에서는 원고 회사의 대표적인 조제분유 상품인 '아기사랑'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극소량만을 판매하였음
공정위 판단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품목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품목의 재고량을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히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성수기에 유통단계에서 품귀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품목의 국내판매량을 유지 또는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 3 조의 2 제 1 항 제 2 호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해당함(공정위 1998. 6. 9. 자 의결 제 98-112 호)
대법원 판단	① 원고 회사(남양유업)의 출고량 감소 및 재고량 증가가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한지 여부는 원고 회사 창고 전부를 기준으로 하거나 적어도 조제분유 품귀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수도권지역에 대한 출고를 담당하는 수색창고와 기흥창고 모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수색창고 한 곳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였으므로 부당하고, ② 조제분유제품은 출고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일정한 재고기간 내지 진열기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며, 특히 원고 회사의 경우 항상 월 말의 출고량이 월 초나 월 중에 비하여 현저하게 소량이므로, 원고 회사의 출고량 감소 및 재고량 증가, 서울지역 4 개 대리점의 '아기사랑' 판매량의 감소가 각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한지 여부는 1997 년 12 월 한달 동안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단지 5 일 동안에 불과한 짧은 기간으로서 그것도 출고량이 항상 감소하기 마련인 월말에 속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이 또한 부당하고, ③ 이 사건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에 조제분유 품귀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기간이 경과한 1998 년 1 월초 이후에 그러한 품귀현상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그 원인도 원고 회사 등 공급업체들의 비정상적인 공급감소에 있다기보다는 가격인상을 앞두고 일부 소비자들이 평상시보다 월등히 많은 양을 사재기한 데에 있는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위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위의결은 그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사실의 기초를 결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 인정(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 두 11141 판결)



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법 5 조 1 항 3 호)

○ 개념

- 직·간접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영 9 조 3 항 1 호)]

- "원재료"에는 부품, 부재료를 포함
- "원재료 구매를 방해한다"함은 원재료 구매를 필요량 이상으로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원재료 공급자로 하여금 당해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 또는 유인하는 것을 말함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영 9 조 3 항 2 호)]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이라 함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서 "기능공 포함"이란 당해 업체의 생산활동에 커다란 타격을 줄 정도로 다수의 기능공이 스카우트되는 경우를 말함

- (가) 당해 업체에서 장기간 근속한 기술인력(기능공 포함)
- (나) 당해 업체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특별 양성한 기술인력(기능공 포함)
- (다) 당해 업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은 기술인력
- (라) 당해 업체의 중요산업정보를 소지하고 있어 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인력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영 9 조 3 항 3 호)]

- "필수적인 요소(=필수요소)"라 함은 네트워크, 기간설비 등(예컨대, 통신, 가스, 전력, 철도망, 항만, 항공시설 등) 유·무형의 요소를 포함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가) 당해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경쟁열위상태가 지속될 것
 - (나) 특정 사업자가 당해 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을 것
 - (다) 당해 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려는 자가 당해 요소를 재생산하거나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법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것
- “다른 사업자”라 함은 필수요소 보유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참여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함
-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거절·중단·제한하거나 이와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함
- (가) 필수요소에의 접근이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부당한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 (나) 필수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사용자에게 비해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이나 배타 조건, 끼워팔기 등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여부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
- (가)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다만, 경쟁의 확대에 의한 이익의 감소는 정당한 보상의 저해로 보지 아니함
 - (나) 기존 사용자에게 대한 제공량을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필수요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다) 필수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라) 기술표준에의 불합치 등으로 인해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마) 서비스 이용고객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9 조 3 항 4 호)]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
-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
-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수
- 다른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 지식재산권 관련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o 관련 사례

현대자동차 사례	
행위 사실	현대자동차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1) 2000 년부터 2004 년 말까지는 판매대리점이 거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 현대자동차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가거나 현대자동차와 사전협의를 거쳐 거점을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판매대리점계약서에 규정, 현대자동차는 위 계약조항에 근거하여 노조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판매대리점들의 자유로운 거점이전을 제한하였고, 2) 판매대리점이 판매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사전에 현대자동차의 승낙을 받거나 등록하도록 판매대리점 계약서에 규정한 뒤, 노조와의 합의 지연 등을 이유로 판매대리점 영업직원 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였으며, 3) 현대자동차가 일방적으로 판매대리점의 판매목표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매대리점계약의 내용을 변경, 목표 달성을 위한 선출고 요구 및 부진대리점에 대한 제재 등을 함
공정위 판단	위 행위는 피심인이 노사합의 지연 등의 내부적인 사유를 들어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자유를 제한하거나 인력채용에 관한 경영판단권을 제한한 것이므로 부당하고, 현대자동차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판매목표가 과도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매우 큰 행위



	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공정위 2007. 5. 18.자 의결 제 2007-281 호)
서울 고법	서울고등법원은 거점이전 제한 및 인력채용 제한에 대해서는 공정위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판매목표 강제 부분은 경쟁제한적 의도나 그러한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공정위 처분 취소 (서울고등 법원 2008. 4. 16 선고 2007 누 16051 판결)

구 포항제철 사례	
행위 사실	철강시장에서 국내 열연코일의 100%를 공급하는 구 포항제철은 현대하이스코(주)가 1999. 2 월 냉연강판공장 완공을 전후하여 시험가동 또는 제품생산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구 포항제철에게 냉연용 열연코일의 공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제품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인 현대하이스코(주)에 이를 전혀 공급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위 행위는 열연코일시장에서의 국내 독점공급(생산)자로서의 구 포항제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품시장인 냉연강판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인 현대하이스코(주)에 대하여 냉연강판 생산에 필수적인 열연코일의 공급을 거절함으로써 냉연강판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인 현대하이스코(주)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냉연강판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함(공정위 2001. 4. 2.자 의결 제 2001-068 호)
대법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거절 등의 행위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되어야 함. 그런데 이 경우 신규진입 업체에 대해서만 공급을 거절한 것이고, 해당 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함(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 두 8626 전원합의체 판결)

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법 5 조 1 항 4 호)

○ 개념

- 직·간접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영 9 조 4 항)



○ 판단기준

- “간접적”이라 함은 특수관계인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당해 행위를 하게 함을 의미
- “새로운 경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업자 및 신규로 진입하였으나 아직 판매를 개시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를 말함
-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재무·판매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함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영 9 조 4 항 1 호)]

- “유통사업자”라 함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거래상대방을 말함
- “배타적 거래계약”이란 유통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만을 취급하고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은 취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함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영 9 조 4 항 2 호)]

-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는 특허권·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행정관청 또는 사업자단체의 면허권 등 인·허가, 기타 당해 거래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 요소의 사용·접근을 거절·제한하는 행위(영 9 조 4 항 3 호)]

[기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9 조 4 항 4 호)]

-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진입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구매를 거절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 당해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부품, 부자재 포함)의 수급을 부당하게 조절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마.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 혹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법 5 조 1 항 5 호)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 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영 9 조 5 항 1 호)]

- “낮은 대가로 공급” 또는 “높은 대가로 구입”했는지 여부는 통상 거래가격과의 차이의 정도 공급 또는 구입의 수량 및 기간, 당해 품목의 특성 및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함
-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목적,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당해 사업자 및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지위 및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 행위(영 9 조 5 항 2 호)]

-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 행위”에 있어서는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의 목적·기간·대상자 및 당해 업종의 유통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관련 사례

인텔 사례	
행위 사실	인텔 및 그 계열사(이하 '인텔 등')는 경쟁사업자인 AMD 가 신제품을 출시하며 PC 용 CPU 시장을 잠식하자 국내 PC 시장의 1, 2 위 사업자인 삼성전자와 삼보 컴퓨터에게 'AMD 가 생산·판매하는 CPU 의 구매를 중단하거나, 인텔 등이 생산·판매하는 CPU 를 전체 구매 CPU 수량 중 일정비율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특정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PC 에 AMD CPU 를 탑재하지 말거나 인텔의 CPU 를 일정비율 이상 유지할 것, AMD 의 국내 신제품 출시 행사에 참여하지 말고 신제품 CPU 탑재 PC 를 출시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
공정위 판단	· 인텔은 CPU 제조, 공급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 · 인텔의 위 행위로 인하여 경쟁사(AMD)의 시장점유율이 실제로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였으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중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공정위 2008. 11. 5.자의결 제 2008-295 호)

이베이지마켓 사례	
행위 사실	오픈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이베이지마켓은 2006. 10. 중순경, 자신의 오픈마켓(G 마켓)에 입점한 업체들 중 경쟁사인 엠플온라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도 입점하여 있던 누리원 등 7 개 사업자들에게, 'G 마켓에서의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엠플온라인에서의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 주로 이베이지마켓과 거래하면서 매출을 올려 줄 것, 엠플온라인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엠플온라인에 올려놓은 상품을 내리지 아니하면 이베이지마켓의 메인 화면에 노출된 상품을 모두 빼버리겠다고 위협
공정위 판단	오픈마켓 운영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와 기획전에서의 재량을 이용하여 7 개사업자들에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한 것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에 해당함(공정위 2010. 10. 22.자 의결 제 2010-120 호)
대법원	대법원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거래의 부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도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의 경우 7 개 사업자들이 엠플온라인과 거래를 중단한 기간이 짧고, 행위의 상대방들이 전체 판매업체들 중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엠플온라인이 이베이지마켓의 행위로 인



	한 매출부진을 이기지 못하여 퇴출된 것인지 여부 등이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공정위 심결을 지지한 원심판결을 파기(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 두 16322 판결)
--	--

4. 위반 시 제재 사항 (법 7 조, 8 조, 124 조, 129 조)

구 분	내 용
시정조치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과 징 금	매출액의 6% 이내(매출액 없거나 산정 곤란 시 20 억원 이내)
벌칙(고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억원 이하의 벌금



Q&A

【질의 1】

사업자방해행위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상의 사업활동방해(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응답 1】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사업활동방해행위)에도 해당됩니다. 그 밖에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중에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 중복될 수 있는 예들이 많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불공정거래행위보다 제재 수준이 높습니다(과징금 매출액의 100의 6 범위 내 / 고발 시 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과징금 매출액의 100분의 4 범위 내 또는 10억원 이하 / 고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의 2】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판매가격을 연간 30% 인상한 행위는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나요?

【응답 2】

사업자는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고 일정가격을 인상하였다는 것만으로 지위남용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가격 상승이 관련 시장에서의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 폭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지위남용행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의 3】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처별, 유통 단계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응답 3】

원칙적으로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규율될 사안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위 행위를



하였고, 유통 단계별 거래처에 대한 사업활동방해(거래처의 가격책정 활동을 방해), 소비자의 현저한 이익 침해행위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 4】

시장지배적 지위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전속거래 등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체결할 경우 언제나 위법한가요?

【응답 4】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특별한 사유 없이, 또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자기와 거래하도록 계약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공정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시설물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그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은 배타조건부 거래가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 5】

특정 품목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대리점이나 충전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해당할까요?

【응답 5】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인텔 등에 대한 공정위 심결례의 경우 공정위는 인텔 등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고 실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지,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 아닙니다. 즉, 공정위는 자사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한 리베이트가 그 구속력이 큰 데다 제공 기간이 길었고 시장 1, 2 위의 점유율을 가진 중요한 거래처에만 제공함으로써 경쟁사의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는 등으로 인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컸으며, 실제로 리베이트 제공 기간 중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만일 당사의 인센티브 시스템에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가 없고 그러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으며, 영업상 합리적인 목적을 위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된다면 법 위반으로 간주될 위험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Ⅲ. 기업결합의 제한 및 신고

1. 기업결합의 제한 (법 9 조)

-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업결합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금지(법 9 조 1 항)

구 분	내 용
주식취득·소유	다른 회사 주식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주식취득 또는 소유기준은 실질적인 소유관계)
타사임원의 겸임	회사의 임원·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대규모 회사 외의 자는 제외)
합병·영업양수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를 하는 경우
회사설립 참여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특수관계인만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상법에 의한 분할에 의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제외)

- 다음의 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제한으로 추정(법 9 조 3 항)

구 분	내 용
시장점유율의 합계 (계열회사 합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 & · 당해 거래분야에서 1 위 & · 시장점유율이 2 위인 회사와 25%이상 차이
대규모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 조원 이상)	·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 & · 당해 기업결합으로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질 경우

- 기업결합제한 예외인정 (법 9 조 2 항)

-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및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2.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법 10 조)

-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함

3. 기업결합의 신고 (법 11 조)

○ 신고대상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 합산)가 3 천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

○ 상대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 억원 이상인 회사

○ 신고대상행위

구 분	내 용
주식취득·소유	다른 회사 주식(무의결권주 제외)의 20%(상장법인: 15%) 이상 소유 및 해당 비율 이상 기소유자의 추가 취득으로 인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타사임원의 겸임	회사의 임원·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
합병·영업양수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 영업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회사설립 참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신고기한

구분	신고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 시기
사전 신고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주식취득) 계약체결일 or 이사회 의결일 / (합병·영업양수) 계약 체결일 이후 기업결합일** 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주총(이사회)의결일 이후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
사후 신고	대규모회사 외의 자	주식취득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 일 이내
		합병	합병등기일부터 30 일 이내
		영업양수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 일 이내
		회사신설 참여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 일 이내
	대규모회사	임원 겸임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

* 대규모회사: 소속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 조원이 넘는 회사

** 기업결합일: (주식취득) 주권교부일, 신주취득의 경우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등 / (임원겸임)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의결일 / (영업양수) 양수대금 지불 완료일 / (합병) 합병 등기일 / (회사신설 참여)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 공정위는 신고를 받은 뒤 신고일로부터 30 일 내 심사 및 결과 통지(필요 시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90 일까지 연장가능)
- 사전신고 의무자는 공정위의 심사결과 통지 수령 전까지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 이행 행위(=양수대금의 완불), 주식인수행위 금지
- 단, 신고기간 이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위에 사전심사 요청 가능

○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 (법 11 조 2 항)

- 신고대상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 억원 미만인 회사('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정위에 신고 의무 있음
 - ①기업결합의 대가가 6000 억원 이상일 것
 - ②소규모피취득회사가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²,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³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

4. 위반 시 제재 사항 (법 14 조, 16 조, 124 조, 130 조)

² 직전 3 년간 국내시장에서 월 100 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영 19 조 2 항 1 호)

³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지출액이 300 억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 (영 19 조 2 항 2 호)



구 분	내 용
시정조치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등 공정위 측 회사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송 제기 가능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불가
이행강제금	시정조치 후 이행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정조치 이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 1일당 다음 금액의 3/10,000 범위 내 -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채무 합계 -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채무 합계 - 영업양수금액 임원 겸임 위반 시 매 1일당 200만원 범위 이내
벌칙(고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과 태 료	사업자는 1억원 이하, 임직원은 1천만원 이하

Q&A

【질의 1】

계열회사간의 기업결합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응답 1】

계열회사간의 기업결합행위도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행완료일 전까지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열회사간의 기업결합은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대상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단, 계열회사간의 기업결합행위 중 계열회사간 임원겸임의 경우와 계열회사간 주식취득은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⁴

계열회사간의 기업결합행위는 기업결합신고 대상 외에도 공정위 주관 공시 대상이 될 수

⁴ 계열회사간 주식취득의 경우 상대회사(피취득회사)가 영 4조 1호 나목.의 지분율 요건이 아닌, 영 4조 2호의 지배력 요건에 따라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계열회사가 상대회사의 주식 취득 시 기업결합(간이)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며 해당하는 경우 적시에 공시를 이행해야 합니다.

【질의 2】

기업결합신고 시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응답 2】

주식취득의 경우에는 취득회사,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당사자가 공동으로,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회사, 임원겸임의 경우는 겸임임원의 소속회사, 회사신설(JV) 설립의 경우에는 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회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질의 3】

갑이 보유한 X의 주식을 갑의 계열회사인 을에게 일부 또는 전부 양도 시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응답 3】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특수관계인인 갑의 주식이 을에게 양도된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질의 4】

갑이 X의 주식 20% 이상을 취득함을 이유로 기업결합 신고를 한 이후, X의 증자 또는 주식 매각 등으로 지분율이 20% 미만인 되었을 경우 신고 철회나 보유주식수 변경 통지 등과 같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요?

【응답 4】

주식취득으로 인한 기업결합 신고의무 여부 판단은 기업결합 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업결합신고 후 보유주식의 매각 등의 사유로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감소한다 하여도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의 5】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A와 B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응답 5】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나, 간이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 6】

서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지 않은 A와 B가 A를 존속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을 하려고 할 경우, 위 합병의 신고 필요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와 B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산정할 때, 합산해야 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응답 6】

기업결합 신고요건 중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은 해당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법 9 조 5 항). 위 사례에서 A의 경우 존속회사로서 합병 전후로 계열관계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현재 A가 속한 기업집단 소속 전체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반면, B의 경우 합병을 통해 통상적으로 종전 상위 계열관계에서 분리되므로 자신과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회사만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합니다.



IV.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1.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법 18 조)

○ 지주회사

-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에 대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로서 자산총액이 5 천억원 이상인 회사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구 분	내 용
지주회사	자본총액의 200%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 금지
	자회사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 50% 미만 소유 금지 (상장법인/공동출자법인의 경우에는 30% 미만)
	계열회사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 5%를 초과하여 소유 금지 (단, 소유하고 있는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5%미만인 지주회사는 제외)
	국내 금융회사 주식 보유 금지 (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완전자회사로서 설립·지배하는 것은 가능 ⁵⁾)
자 회 사	손자회사 주식 당해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 50%미만 소유 금지 (상장법인/공동출자법인의 경우에는 30% 미만)
	손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국내 금융회사 지배 금지(주식 소유는 가능)
손자회사	증손회사(금융사 또는 보험사를 제외한 계열회사 지분 100% 보유)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 지배목적이란?

⁵ 2023. 12. 21. 시행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벤처투자회사를 완전자회사로서 설립·지배하는 것을 허용함



회사가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형성·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

2.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법 17 조)

o 신고기한(영 26 조 2 항)

- 지주회사 설립하는 경우: 설립 등기일로부터 30 일 이내
-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합병 등기일 또는 분할 등기일로부터 30 일 이내
-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또는 자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로부터 4 개월 이내

o 자료제출의무 (영 26 조 1 항)

- 신고인의 성명,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와 증손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제출

3. 위반 시 제재 사항 (법 37 조, 38 조, 124 조, 126 조)

구 분	내 용
시정조치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불가
과 징 금	관련 위반 금액의 20% 범위 이내
벌칙(고발)	행위제한 위반: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억원 이하의 벌금 설립 전환신고/보고의무 위반: 1 억원 이하의 벌금



V. 경제력 집중의 억제

1.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 도입배경

-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경제력이 집중될 경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저해 및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어려워질 우려
-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시장경쟁 저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 1986. 12. 공정거래법에 도입

○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 조원 이상) 지정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 천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지정

2.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준수사항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상호출자의 금지	상호출자방식에 의한 계열회사 주식 취득 또는 소유 금지	상출집단
채무보증의 금지	여신편중 및 부실기업 지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상동)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계열 금융·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을 통하여 계열회사를 확장·지배하는 것을 금지	(상동)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공시	일정규모 이상(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이거나 50 억원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이를 공시	공시대상집단
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일반·주식소유·계열회사·상호출자·채무보증·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현황 공시	(상동)
공익법인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상동)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하 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이를 공시	
신규순환출자 금지	상출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상출집단

○ 상호출자의 금지 (법 21 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
- 회사합병,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의 경우는 제외되나 소유
주식을 취득·소유한 날로부터 6 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 채무보증의 금지 (법 24 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것
을 금지
- 채무 인수를 통한 중첩적 채무인수, 비계열사와의 교차 채무보증 금지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법 25 조 1 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
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 다만,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내계
열회사의 주총에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변경, 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의
합병, 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의 영업양수도 등을 결의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
로 의결권 행사 가능(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법 25 조 2 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
익법인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 다만,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내계열회사
의 주총에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변경, 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의 합병,
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의 영업양수도 등을 결의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의



결권 행사 가능(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⁶⁾)

o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26 조)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 억 원 이상인 내부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이사회 의결 후 1 일(비상장 7 일)이내 공시⁷
- 공시대상: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상품·용역거래(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
- 공시내용: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규모 및 조건 등

o 공익법인의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29 조)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혹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 억 원 이상인 내부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이사회 의결 후 1 일(비상장 7 일)이내 공시
- 공시대상: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상품·용역거래(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
- 공시내용: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규모 및 조건 등

【 거래금액의 산정원칙 】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4 조

구 분	내 용
자금거래	·실제 거래하는 금액

⁶ 다만 계열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3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됨. (2023. 12. 31.까지는 30%, 2024 년 25%, 2025 년 20%, 2026 년부터 15%) (부칙 7 조)

⁷ 2024.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①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기준금액이 100 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② 5 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됨



유가증권거래	·실제 거래하는 금액
자산거래	·실제 거래하는 금액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담보 한도액, 부동산임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연간임대료와 계약기간 동안의 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47 조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간임대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보험계약은 보험료총액을 기준)
상품·용역 거래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

○ 신규순환출자 금지(법 22 조)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 신규순환출자: 새로운 순환출자고리를 형성 및 기존의 순환출자고리를 강화하는 추가 출자
- 예외: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영업전부의 양수 등), 정당한 권리행사(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수령) 및 기업구조조정 조정 등에 따른 예외 사유에 따라 6 개월 ~ 3 년의 해소유예기간 부여

3. 계열회사의 편입 제외 (법 32 조)

- 공정위는 계열회사 편입 제외 사유 발생시, 회사(특수관계인 포함)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심사하여 편입 제외 및 결과 통지(30 일 이내, 60 일 범위 이내 기간 연장 가능)
-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 발생 시 30 일 이내에 변동사유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함(영 37 조 3 항)
- 공정위의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 거래관계자료)
- 자료 제출 거부, 허위자료 제출로 미편입시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것으로 의제

4. 위반 시 제재 사항 (법 37 조, 38 조, 124 조, 130 조)

구 분	내 용
시정조치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일부 처분, 채무보증의 취소,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등
과 징 금	·상호출자 금지 및 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 시



	-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취득가액의 20% 이내 채무보증의 금지 위반 시 - 위반 채무보증액의 20% 이내
벌칙(고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억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사업자는 1 억원, 임직원은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Q&A

【질의 1】

양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 두 회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하나요?

【응답 1】

거래규모가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질의 2】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50 억원 이상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나요?

【응답 2】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자금액이 50 억원 이상(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이더라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 3】

계약조건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와 계약의 연장 없이 그대로 두는 경우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 건가요?

【응답 3】

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객관적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그대로 두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기간 방치하여 사실상 계약연장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VI.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1.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일반 (법 40 조)

가. 의의

-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법 40 조 1 항)

나. 요건: 둘 이상의 사업자 + 경쟁제한적 합의(※실행행위 불요)

o 주체: 둘 이상의 사업자일 것

- 다수의 사업자를 실질적·경제적 관점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 그들 간에 이루어진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성립(단, 입찰담합의 경우 제외)
-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모자 회사의 경우 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규율됨
- 다만, 관련시장 현황, 경쟁사업자의 인식, 당해 사업자의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자로 규율됨

o 합의의 존재

[합의의 개념]

- 합의는 계약, 협정, 결의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업자간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것을 말함



【 부당 공동행위 금지 유형 개관 】

구 분	내 용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가격인상·인하·유지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합의
거래 및 대금지급 조건의 결정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합의하는 행위
생산·출고 제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 조건을 제한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하는 행위
거래 제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시설투자 제한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상품 제한	상품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공동회사의 설립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입찰담합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사업자간에 사전에 낙찰자, 경락자, 투찰 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합의하는 경우
타사업자 방해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법 2조 5호)
정보 교환	경쟁사업자와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직접증거에 의한 입증]

- 부당공동행위의 합의를 입증하는 전형적인 직접증거는 합의서나 약정서와 같은 서류 등이며, 아울러 합의에 참가한 자들의 증언 또한 이러한 직접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

(예시) 합의서, 합의각서, 이행각서, 협정 요금표, 판매기준가격표, 판매단가표, 공



동의 가격표, 가이드라인협정, 단가합의서, 결의문, 결의내용, 협약서, 합의사항, 합의 내역을 불참자나 거래처 등에 통보하는 공문, 합의사항 위반에 대한 관급배정 포기각서, 조사 개시 후 작성된 각서파기합의서, 기본협약서, 시장정화기준, 입찰 협의안, 입찰참여 예정업체별 투찰가, 모임보고나 회의결과보고 기타 합의사실을 보고하는 내부보고서, 합의사항을 적은 메모 등의 문건 등

[간접증거에 의한 입증]

- 직접 증거가 없을 경우 합의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예시) 경험칙상 합의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각종 모임의 대화나 이메일, 특히 합의참가자의 모임 사실, 문건에 기재된 행위가 실제로 행해진 사실, 문건에서 정해진 순번에 따른 낙찰사실,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합의사항 운영 지침을 제정하거나 그 이행 감시단을 운영한 사실, 합의내용을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추진한 사실, 또는 문건의 내용을 합의참가자에게 통보한 사실 등

[합의의 추정]

- 2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외형상 일치)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및 사업자들 간에 부당공동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합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함(법 40 조 5 항)
- ‘합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간에 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조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연락,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사업자들은 그러한 합의를 하더라도 그 증거를 남기지 않거나 이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은 ‘합의의 추정’ 조항을 두고 있음
- 합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들[공정위 「공동행위 심사기준」Ⅲ. 나. (2)]

- ①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예 1>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예 2>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②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 1>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예 2>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 ③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예 1>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예 2>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예 3>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 ④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예 1>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예 2> 거래의 빈도가 낮은 시장,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급자의 행위 일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 ⑤ 각 유형별 공동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경우⁸

<예> '공동행위에 필요한 정보'란, 가격, 생산량 등 교환되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인 경우, 사업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임박해 정보가 교환되었던 경우,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가격 등 경쟁변

⁸ 정보교환 합의는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그 자체로 부당공동행위가 되지만,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합의를 추정하는 강력한 정황증거가 되기도 함



수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사업자는 그들 행동의 일치가 합의가 아닌 “개별 사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합의가 없었더라도 그러한 행위의 일치가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입증하여 공정거래법의 합의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음
-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는 과점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사업자간에 의사적 연락은 없지만 경쟁사업자의 행동을 인식하고 경쟁사업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합의가 없으므로 공동행위 불성립

○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것

- 공정거래법은 모든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음

[경성공동행위]

-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가격 제한, 산출량 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에 대한 합의가 이에 포함됨
- 대법원 판례는 경쟁제한적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성공동행위와 효율성증대 효과가 함께 나타나는 연성공동행위를 명백하게 구분하지 않고,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은 당해 상품의 특성, 당해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연성공동행위]

-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공동생산, 공동연구·개발,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등에 대한 합의
- 연성공동행위는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
- 연성공동행위의 경우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당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즉,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심사절차를 거쳐 경쟁제한적 효과를 판단함

다. 적용제외

[공동행위의 인가](법 40 조 2 항)

-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 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로서, 사전에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공동행위의 인가제도의 활용률은 낮음. 현재까지 벨브제조업 카르텔, 항공화물 수수료 카르텔, 향만산업의 수수료 카르텔 등 10 개 미만의 공동행위만이 공정위의 인가를 받았음

[소상공인 단체의 협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경우]

- 가맹점, 대리점 분야에서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해당 유력 사업자인 가맹본부, 공급업자와 거래 조건에 협의하는 경우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이 2020. 3. 31.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이에 따를 경우 소상공인들의 단체를 통한 거래조건 등의 합의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

-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함. 관련 산업에서 인·허가권, 감독권을 가지는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는 사실상 구속적 효력이 있음
- 공정위 및 법원은 기본적으로 담합행위에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와는 별도로 사업자들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는 입장임

- <예 1> 행정기관이 가격 인상률을 5% 이하로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는데 사업자들이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가격 인상률을 5%로 통일한 경우
- <예 2>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후, 별도의 모임을 가지고 행정지도의 수용여부, 시행절차나 방법 등을 합의한 경우
- <예 3> 행정지도 전에 사업자들이 가격인상 정도 등을 합의한 후 행정지도에 공동으로 대응한 경우

-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공동행위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이 심사지침에 따르면, 행정지도를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따르면 적법하나, 행정지도를 빌미로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것은 위법임
- 단,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가 법 116 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에게 사업자들로 하여금 가격 등 경쟁요소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부과된 처분에 따라 사업자들이 가격 등을 합의한 때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법 40 조 1 항 1 호)

- ‘가격’이란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이자 등 명칭 여하를 불문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
-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



○ 관련 사례

4 개 정유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례	
행위 사실	정유 4 사는 상호간 의사연락을 통해 가격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등유, 경유의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휘발유, 등유, 경유의 S 사의 고시 공장도가격(드럼당)을 기준으로 각각 7,000 원, 10,000 원, 10,000 원을 할인한 금액을 2004. 4. 1. 시장의 유종별 목표가격으로 설정함 정유 4 사는 경질유제품의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공익모임을 운영하면서 가격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이행여부를 상호 감시하였는바, 그 결과 가격담합 기간 중 원유가 인상은 리터당 약 20 원에 그친 반면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가격은 휘발유 약 40 원, 등유 약 70 원, 경유 약 60 원이 각각 인상됨
공정위 판단	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다고 하나 경질유 가격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점, 석유정제업은 장치산업으로 신규진입이 어려운 과점시장인 점, 가격의 공동결정은 경쟁제한성이 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함(공정위 2007. 4. 12. 자 의결 2007-232 호)
법원	서울고등법원은, 정유사간 담합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특히 S 사가 그러한 합의에 참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의식적 병행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과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식적 병행행위의 외형마저도 인정할 수 없는 본 사건에서는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부족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인데 다른 3 사가 당 S 사의 공격적 가격인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사실만이 나타날 뿐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함(서울고법 2010. 2. 11. 선고 2007 누 11513 판결).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확정(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 두 3784 판결)

L 사 및 S 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례	
행위 사실	L 사 및 S 사(이하 '2 개사')의 경우 2001. 1 월부터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2 개사는 수입한 LPG 의 공장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독자적인 가격산출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가격관리 당시 정부가 사용하던 원



	가연동제 공식과 지수 등을 사용하면 동일한 결과가 산출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유화 시행초기(2001. 1.)부터 2002. 6.까지 아래 원가연동제 공식과 지수 등을 사용하여 공장도가격을 결정한 사실
공정위 판단	(합의 추정) ① 피심인들 사이의 단가 차이가 1 kg당 최대 1.20 원에서 최소 0.01 원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여 외형의 일치가 인정되며, ② 가격자유화 이전에 정부가 사용하던 원가연동제 공식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온 점, 가격을 완충조정한 경우를 보면 사전 정보교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 일정기간의 동일 수준의 가격결정에 대하여는 시장상황의 결과로 해명할 근거가 없는 점, 피심인들이 평소 상호간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실태조사에 대비하여서도 공동대응한 점, 피심인들의 가격담당 팀장 등이 가격 자유화 전후 수시로 만나서 '가격 등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사안별 공조를 거듭 확인하고 회합을 수시로 갖기로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합의가 추정됨 (경쟁제한성) 피심인들에 실질적 시장지배력이 있고, 생산단계(수입/정제)는 사실상 수입 2 사의 복점구조로 피심인들이 LPG 공장도가격 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점, LPG 공장도가격은 거래상대방에 관계없이 가격할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정찰제인 점, LPG 수입업시장에 제도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경쟁제한성 인정(공정위 2002. 10. 31.자 의결 제 2002-225 호)

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법 40 조 1 항 2 호)

- '거래조건'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거래의 장소, 거래의 방법,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함
-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이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같이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과 관련된 조건을 의미함

o 관련 사례

광주지역 주유소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행위 사실	광주지역 40 개 주유소 대표자들은 '광주지역 주유소자동세차기 운영협회' 총회를 개최하고 일정액 이상 주유 고객에게 무료 제공하던 세차서비스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유료화(1,000 원)하기로 합의하며 불참 회원에게는 전화로 합의 내



	용을 통보한 행위
공정위 판단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상품판매에 대한 거래조건을 자신의 영업전략에 의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사업자인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자신들의 상품인 유류를 판매하면서 일정금액 이상의 주유를 한 이용고객에게 상품의 판매조건으로 1,000 원의 세차료를 받기로 합의한 행위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로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공정위 1997. 5. 23.자 시권 1997-139 호)

다.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법 40 조 1 항 3 호)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등
-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등

o 관련 사례

6 개 정유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행위 사실	6 개 정유회사는 일정 기간의 판매실적을 토대로 회사별, 유종별 기준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판매물량을 유지하기로 합의·시행한 후, 위와 같이 합의한 기준 시장점유율을 상호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기준 시장점유율 초과 판매 시 초과 판매자가 미달 판매자로부터 정산구매(Buy-Back)하고, 경질유 초과 판매분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정하여 초과 판매자가 미달 판매자에게 위 사 후정산 구매 시 벌과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공정위 판단	정유사들의 Buy-Back 관련 협이가 국내 민수 및 군납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로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공정위 1988. 4. 13. 자 의결 제 88-30 호)

라.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법 40 조 1 항 4 호)



-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등
-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 하고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o 관련 사례

정유 5 사의 주유소 원적지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	
행위 사실	기존 주유소와 거래를 함에 있어 경쟁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영업하고 있거나 종전에 경쟁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영업하였던 주유소와는 서로 거래 하지 아니함
공정위 판단	피심인들이 거래상대방인 주유소에 대한 유치 경쟁을 자제함으로써 피심인별 계열 주유소의 점유율을 고착화시키고, 정유사 간 주유소 유치경쟁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주유소의 거래 조건 개선을 차단함으로써 경질유 석유제품 도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로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공정위 2011. 9. 16. 의결 제 2100-161 호)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각 당사자의 상고에 대해 제출된 사정들만으로는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공정위의 판단을 부정하였음(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 두 18759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 두 19387 판결,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2 두 21840 판결)

마.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법 40 조 1 항 5 호)

-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설비 총량 또는 신·증설 규모를 정하는 행위,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유도하는 행위 등

o 관련 사례

7 개 버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행위	7 개 버스사업자들은 2004. 3. 24. 버스의 노선 신설·연장 제한 및 증차 제한을



사실	합의하고 이를 실행
공정위 판단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의 자유로운 경영판단을 제한하고, 지역주민(소비자)의 버스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함(4 호와 5 호에 모두 해당, 공정위 2009. 1. 2. 의결 제 2009-002 호)

바.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법 40 조 1 항 6 호)

- 특정 종류·규격의 상품·용역을 생산·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별로 상품·용역의 종류·규격을 할당하는 행위, 새로운 종류·규격의 상품·용역의 생산·공급을 제한하는 행위 등

o 관련 사례

6 개 출판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행위 사실	6 개 출판사들이 교과서의 제작·판매를 독점한 6 개 출판사들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자습서 및 카세트테이프의 생산·판매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들 영어 교재의 규격·체제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다음 이를 시행
공정위 판단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시에 그 상품의 규격을 공동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공정위 1990. 10. 24. 의결 제 90-62 호)
법원 판단	공정위의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을 긍정함(서울고등법원 1992. 4. 22 선고 91 구 3248 판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 누 8040 판결)

사.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법 40 조 1 항 7 호)

- 상품·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이를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등

o 관련 사례

서울 강서구 LPG 통합판매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행위 사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7 개 LPG 통합판매점들이 그들을 공동관리하기 위한 기구인 '강서가스산업상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강서가스산업상사는 위 7 개 통합판매점들이 매월 적용할 판매가격을 위 상사의 회장이 지정하여 전화 또는 회의를 통하여 위 통합판매점들에게 통보하여 옴
공정위 판단	지역 판매업자 80%의 영업이 통합되고, 관리기구에서 지정한 가격대로 판매한 비율이 60% 이상이며, 통합 판매 이후 마진폭이 더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함(공정위 2002. 10. 31. 의결 제 2002-226 호)

부천시 10 개 LP 가스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행위 사실	석유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부천시 LP 가스 안전관리협회'를 통해 판매사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합의
공정위 판단	부천시 지역 LP 가스 판매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판매사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였고, 소비자의 판매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져 부당한 경쟁제한성은 인정되며, 가격 인하 등 직접적인 소비자 편익 증가로 연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경제적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함(공정위 2012. 2. 10. 의결 제 2012-018 호)

아. (입찰담합)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법 40 조 1 항 8 호)

- 낙찰예정자 또는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업자가 낙찰 또는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등
- 다수의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들이 낙찰 또는 경락받을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를 결정하는 행위 등

○ 관련 사례



5 개 정유사 군납유류 구매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행위 사실	5 개 정유사들은 군납유류 구매입찰 시 연도별로 각각 사전에 모임을 갖고 전체 입찰유종에 대해 유종별 낙찰예정업체, 낙찰예정업체의 투찰가 및 들러리업체의 들러리 가격, 희망수량경쟁입찰의 투찰 물량 등을 합의하여 응찰
공정위 판단	피심인들의 행위는 각각 1998 년도, 1999 년도 및 2000 년도 군납유류 입찰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됨(공정위 2000. 10. 17. 의결 제 2000-158 호)
대법원 판단	H 사, I 사, S 사의 불복에 대하여 공정위의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은 긍정하였으나, 과징금 산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각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이에 따라 과징금 재산정됨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 두 6842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 두 5627 판결 등)

자. 1 호부터 8 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 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법 40 조 1 항 9 호 전단)

-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유로운 연구·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과 같이 1 호부터 8 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됨
-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됨

o 관련 사례

정유 5 개사 및 한국주유소협회부산광역시지회의 부당한 공동행위	
행위 사실	정유 5 개사가 '98.11 월경 "수입석유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수입업체의 수입, 유통 물류기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 유류저장시설을 일괄 임차하는 방안, 수입업자의 덤핑가격 공세에 대한 시장대응 방안, 무풀, 수입풀 주유소 양산억제 및 수입제품을 공급받는 주유소에 대한 제재방안, 수입



	유류 수송차량의 정유사 저유소 출입통제방안 및 그 시행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정유 4 개사는 「공동감시조」 및 각 지역의 대책반을 통해 수입업체를 감시하고 수입석유 수송차량에 대해서는 각 정유사의 저유소 출입을 통제하여 수입석유의 유통을 방해하였으며, 김해 등 가격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주유소 판매가격을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였음
공정위 판단	위 행위는 석유제품 공급자 및 공급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석유제품 수입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로서,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함(공정위 2001. 07. 24. 의결 제 2001-106 호)

차. 1 호부터 8 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법 40 조 1 항 9 호 후단)

3.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유인 제도

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법 44 조)

o 의의

- 공정거래법은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일정한 조치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동행위의 적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o 감면 요건 및 기준(영 51 조)

[조사 개시 전 최초 신고자]

-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모두 면제
 - ① 공정위의 조사 개시 전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 ②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



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하였을 것

- ③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 '조사가 끝날 때까지' = 위원회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이하 동일)
- ④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조사 개시 전 두 번째 신고자]

- 이하 요건 충족 시 시정조치 감경, 과징금 50% 감경, 고발 면제
 - ① 공정위의 조사 개시 전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 ②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 ③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 ④ 부당한 공동행위 참여사 2 개 초과 & 1 순위 자진신고 이후 2 년 내 신고하였을 것

[조사 개시 후 최초 신고자]

- 이하 요건 충족 시 시정조치 감면, 과징금 및 고발 면제
 - ① 부당한 공정위의 조사 개시 후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 ②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 ③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 ④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조사 개시 후 두 번째 신고자]

- 이하 요건 충족 시 시정조치 감경, 과징금 50% 감경, 고발 면제
 - ① 공정위의 조사 개시 전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 ②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 ③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 ④ 부당한 공동행위 참여사 2 개 초과 & 1 순위 자진신고 이후 2 년 내 신고하였을 것

[감면 예외]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i)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ii) 법 40 조 1 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다시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감면 효과 불인정

[관련 판례]

- 최근 조사 개시 후 2 순위 조사협조자의 감면지위를 부정한 판결(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 두 54746 판결)이 존재함(상세 내용은 아래 표 참조)
- 이후 공정위는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자의 감면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 높아짐

사실관계	· 공정위는 담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 한국스택의 감면신청을 기각하고, 다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은 인정하고 과징금의 10%만 감경 · 이에 한국스택은 불복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의 50% 이상 감면되는 조사협조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
서울고법 판단	· 공정위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더라도 한국스택을 2순위 조사협조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 · 2순위 조사협조자에는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이 요구되지 않음



대법원 판단	·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공정위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자료를 제출했다면, 1순위 조사협조자 뿐 아니라 2순위 조사협조자로도 볼 수 없음 · 조사협조자 감면 제도는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 사이 신뢰를 약화하고 공정위가 부당 공동행위를 쉽게 적발하기 위한 취지인바, 이 같은 취지에 비춰보면 공정위가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는 조사협조자가 성립할 수 없고, 이는 1순위는 물론 2순위도 마찬가지(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4746 판결)
-----------	--

나. 추가 감면 제도(Amnesty Plus. 영 51 조 1 항 4 호)

- 위의 감면제도와는 별도로 공정거래법은 추가 감면 제도 즉, 앰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 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 부당한 공동행위(=당해 공동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1 순위로 자진신고를 하여 감면지위를 인정받은 경우(=감면신청에 대한 공정위의 의결서 송달 시), 당해 기업은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규모가 작은 부당공동행위를 신고하여 큰 규모의 부당공동행위에 있어서 과징금 면제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부당공동행위의 감액률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이하 표 참조)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의미. 이하 동일)가 당해 공동행위의 규모(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의미. 이하 동일)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20% 범위 내 감경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크고 2 배 미만인 경우	30% 감경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의 2 배 이상 4 배 미만인 경우	50% 감경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4 배 이상인 경우	면제



다. 신고자 포상 제도

-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외한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익편취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법 91 조)

4. 위반 시 제재 사항 (법 42 조, 43 조, 124 조, 129 조)

구 분	내 용
시정조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과 징 금	매출액의 20% 이내(매출액 없거나 산정 곤란 시 40 억원 이내)
벌칙(고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억원 이하의 벌금 시정조치 등에 불응 시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Q&A

【질의 1】

사업자간 공동으로 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나요?

【응답 1】

사업자간의 공동행위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가격담합, 출고제한, 물량배분,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있어야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하여도 법령에 따른 행위(법 116 조), 소규모 사업자 등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일정한 조합의 행위(법 118 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한편 특수목적(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중소기업경쟁력 향상, 거래조건의 합리화)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담합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질의 2】

원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라 가격을 인상할 경우 다른 가스회사들도 당사와 비슷한 원가상승 요인으로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나요?

【응답 2】

가스회사들에 공통되는 원가상승요인 발생 시 이는 모든 가스회사들에 비슷하게 적용되고, 그 결과 가격 변동에 있어 외형상 일치가 일어나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당공동행위로 오해 받지 않도록 가격인상 원인이나 경위 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 3】

경쟁사 영업사원들과 친목모임을 가지며, 상호간 정보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나요?

【응답 3】

경쟁사 직원들과의 단순한 친목모임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합의입증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추정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경쟁사 영업사원들과의 모임에서 장래의 가격이나 생산량 결정에 관한 회의를 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하며 이를 반영하여 가격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행위는 합의추정의 근거가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의사연락의 상호성이 인정될 경우 가격 결정 등에 대한 (묵시적)합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 4】

가격 결정 등에 합의가 인정될 수 없어도 외형적 시장 행동의 일치(예: 경쟁사 간 가격 인상의 폭과 시기가 일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동행위가 추정될 수 있나요?

【응답 4】

법원은 업체간 가격인상의 단순한 모방 정도(의식적 병행행위)만으로는 그러한 합의의 추정을 부인하는 판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도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진 정황증거가 있어야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로서는 합의의 추정을 위해서 외형상의 행위 일치 이외에도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 예컨대 사업자간 평소 담당자들이 다수의 협의를 하고 가격 등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 제반 여건상 가격 인상 요인이 없거나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각 사업자 별로 유사하게 상승하였다거나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도 출하량이 일률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사실,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사실 등과 같이 합의가 없이 시장상황 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결과가 존재하는 사정 등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질의 5】

판매부서에 전달하는 문서에 경쟁사의 관련 정보(예: 가격인상 및 신상품 출시 등)가 언급되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나요?

【응답 5】

단순히 판매활동에 참고하기 위해 판매부서에 다른 가스회사 관련된 과거 또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부당공동행위로서 문제될 소지는 낮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전달 행위는 합의추정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담긴 문서에 그 공개된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달리, 경쟁사의 공개되지 않는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거래조건·대금지급조건, 출고량, 재고량 또



는 판매량 등을 판매부서에 전달하는 경우, 이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보교환으로서 정보교환을 통한 공동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 6】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조사는 영업활동에서 중요하고 당연한 행위인데, 다른 LPG 수입사 내지 가스회사의 가격동향을 수첩에 적어 놓는 것이 부당공동행위의 증거가 되나요?

【응답 6】

다른 LPG 수입사 또는 가스회사의 LPG 관련 가격동향을 수첩에 적어 놓는 것 자체만으로는 공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물론 기재된 정보가 경쟁사의 최근 재고량, 생산량에 대한 정보이거나 미공개된 장래의 가격 인상 내지 출고계획 등에 대한 자료인 경우에는 담합에 대한 유력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정황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정황증거상 합의가 인정 또는 추정되는 경우(즉, 가격 인상에 대한 외형상 일치, 경쟁사 담당자들간 다수의 만남을 통해 가격 인상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경쟁사 간 합의가 없이는 설명하기 힘든 사정의 존재 등과 같은 정황 등이 다수 존재할 경우)에 다른 가스회사의 가격동향을 수첩에 자세히 적어 놓았다면 이는 평소에도 가스회사들 간에 긴밀한 만남을 가지며 가격 결정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사의 정보는 그 정보의 출처가 공개된 것이어야 하며 해당 정보의 출처를 수첩에 자세히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 7】

다른 가스회사 임직원이 아닌 제 3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쟁사와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나요?

【응답 7】

제 3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쟁회사와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당해 회사가 가입한 사업자단체 소속 담당자를 통하거나, 충전소, 대리점, 직매처 등 거래처를 통하여 경쟁사와 정보 교류를 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정보교류 자체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교환이 경쟁을 제한한 경우이거나 정보교환 외에 합의 내지 의사연락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여러 간접사실 내지는 정황사실이 존재하



여야 합니다.

【질의 8】

일정지역 소재 충전소의 대부분이 부탄의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였다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나요?

【응답 8】

충전소들이 사전협의 등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였다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인근의 다른 충전소들(각자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을 이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면 그 지역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 9】

사업자들이 정부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예: 가이드라인 준수 요청)에 따라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나요?

【응답 9】

행정관청의 행정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경쟁사와 별도로 가격 수준이나 시행방안 등을 합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관청의 주최로 소집된 회의에서 행정관청이 가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한 이후, 가스회사들이 모여 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경쟁사들 간 합의 없이 개별 회사가 각자 자신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가이드라인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규제기관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개별 회사들은 위와 같은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VII.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법 45 조)

1. 제도 일반

o 의의

-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행위로, 크게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불공정거래행위로 구분됨
-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 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지원 등이 있고(법 45 조 1 항 및 영 52 조 별표 2),
-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아래와 같은 별도의 고시 등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부당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

o 요건: 법 45 조 1 항 각호 행위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o 공정거래저해성

-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의미
-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
- **불공정성(unfairness)**이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함



○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없이' 구분

- 공정거래저해성은 그 판단방법과 관련하여 영 52 조 [별표 2]의 각호에서 다시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없이'로 구체화됨
-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불공정성(unfairness)과 효율성 증대효과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 형량하여 경쟁제한성·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봄.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
- '정당한 이유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계속적 염매)에 대해서는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봄. 피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입증 책임 부담

○ 다른 규제와의 관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는 위반행위의 유형면에서 중복되거나 공통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법 5 조 1 항 3 호)와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염매(법 45 조 1 항 3 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양자는 형벌이나 과징금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규정을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

- 일반법과 특별법에 중복되는 규정이 존재할 경우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각 특별법이 공정거래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 안전지대

[안전지대의 의미]

- 안전지대란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미미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외형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심사면제 대상'을 의미함



- 현행 심사지침상 해당 사업자의 점유율(공동의 경우 사업자들의 합산 점유율) **10% 미만**인 경우 원칙적 심사 면제

[안전지대의 효력]

- 안전지대는 법 45 조 1 항의 불공정거래행위(9 호의 부당한 지원행위는 제외)에 한정. 안전지대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행위라도 공정위가 동법의 적용을 위한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님. 또한, 안전지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의 행위라고 하여 자동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되는 것도 아님

[안전지대가 적용되는 행위 유형]

- 안전지대는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배제, 구속조건부거래)에 대해서 적용됨
- 안전지대를 적용하는 이유는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 등이 작을 경우 시장경쟁 상황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임. 반면, 불공정성(unfairness) 위주로 심사하는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안전지대가 적용되지 아니함

2. 구체적 유형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 】

구 분	내 용
거래거절	공동의 거래거절, 기타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차별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부당고객유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구속조건부 거래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사업활동 방해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부당한 지원행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



	금·인력·부동산·상품·용역·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지원하는 행위
기 타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가. 거래거절

-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음
- 그러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를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이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됨

o 공동의 거래거절

- **개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대상행위**
 -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 또는 계속의 거절이 포함됨
 - ✓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됨
 - ✓ 거래거절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 따라서,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 안됨
 - ✓ 사업자가 아닌 거래상대방, 즉 소비자에 대한 거래거절은 대상 아님
- **위법성의 판단기준**
 - ✓ 공동의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관련 시장'이라 함은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속한 시장을 말함



- ✓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는 여러 사업자와의 거래개시 또는 계속이 제한되므로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봄
- ✓ 그러나, 아래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① 재고부족이나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특정사업자가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③ 사업자들이 사전에 당해 사업영위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 ④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⑤ 공동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안전지대:** 공동으로 거래거절한 사업자들의 점유율합계가 10% 미만 시 심사면제

- **관련사례**

국민은행 등의 공동 거래거절	
행위 사실	국민은행 등은 CD 공동망 수수료를 은행과 거래 시는 낮게 책정하고 카드사와 거래 시는 높게 책정하였는데,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카드사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수료를 낮게 받자 7 개의 타 은행은 하나은행에게 동 서비스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하나은행이 이를 거절하자 카드사의 가상계좌가 자신들의 시스템에서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 CD 공동망에서 단절시킴
공정위 판단	7 개 은행이 공동으로 CD 기 이용 상의 신속성 및 편의성 증대를 방해하고 하나은행의 영업을 제약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음 (공정위 2002. 1. 8. 자 의결 제 2002-001 호)
대법원 판단	이 사건 CD 공동망은 기본적으로 참가은행들 사이의 예금잔액조회 및 예금인출서비스를 공유함을 전제로 구축, 운영되어 온 전산망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에 있어서는 전산망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참가은행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 7 개 은행들을 비롯한 참가은행들은 현금서비스에 관하여는 이 사건 CD 공동망이 전면 개방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제휴은행들과 사이에서 별도로 구축된 현금서비스망을 통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데 비하여, 삼성카드는 사실상의 현금서비



	스제공을 예금인출로 가장하는 방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예금인출 수수료만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CD 공동망을 이용하여 모든 참가은행들로부터 제한 없는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참가은행들보다 부당하게 경쟁우위에 설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은 이 사건 CD 공동망을 예금인출기능으로만 이용하기로 하는 참가은행들 사이의 사실상의 내부약정 및 이용관행에 위반하는 행위인 동시에 CD 기를 개방하지 않은 은행들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반하여 CD 기를 현금서비스업무에 전면 개방할 것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는 점, 삼성카드 등의 전문계 카드사들은 종전과 같이 개별 참가은행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건당 수수료 1,000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CD 공동망을 현금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7 개 은행들의 위와 같은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신용카드시장에서 다른 거래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없어 거래기회가 박탈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을 뿐더러, 직접적인 거래거절의 상대방인 하나은행 역시 이로 인하여 다른 거래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없게 되었다거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부당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전문계 카드사들이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CD 공동망을 전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고객 수가 급증하여 전산망 시스템에 적지 않은 부하를 주게 되므로 참가은행들은 향후 시스템 보수와 확대 및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 명백하나, 그로 인한 이득은 변칙적인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은행 등 일부 참가은행의 수수료 수입에 국한되는 데 비하여 나머지 참가은행들은 그 동안 전문계 카드사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한 현금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아 온 수수료 수입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위 판단 부정함 (서울고등법원 2003. 10. 23 선고 2002 누 164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 두 14253 판결)
--	---

○ 기타의 거래거절

- **개념:**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대상행위**
 - ✓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됨.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 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
- ✓ 거래거절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 따라서,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 안됨
- ✓ 사업자가 아닌 거래상대방, 즉 소비자에 대한 거래거절은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위법성의 판단기준

- ✓ 단독의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단 관련 시장'이라 함은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속한 시장을 말함
- ✓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①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사업영위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②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대체거래선을 큰 거래비용 없이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거절의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③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 ④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⑤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
- ✓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거래거절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①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 ②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 ③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④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불이익의 일환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거래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 또는 사업활동방해(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될 수 있음 ➔ 경쟁제한성 분석 불요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예 1)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예 2)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후방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공급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예 3)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예 4) 자기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를 당해 완성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해 경쟁자에 대하여 종래 공급하고 있던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예 5)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제조업자가 자신의 시장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직접 생산·조달하려는 완성품 제조업자에 대해 원재료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예 6) 합리적 이유 없이 할인점이나 온라인 판매업자 등 특정한 유형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
예 7)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함으로써 당해 물품·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안전지대:** 해당 사업자들의 점유율이 10% 미만 시 심사면제.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대상으로 함



- 관련사례

(주)수인가스의 거래거절행위	
행위 사실	수인가스는 유공 및 유공가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오다가 계약기간 중 기간 중 현대정유로부터 70 억원(충전소 보수 및 영업활동 지원금 명목 유/무이자 50 억원, 유공 등과의 거래종료로 인한 채무상환 명목 무이자 20 억원)의 자금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대정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현대정유와의 위 대리점 계약에 따라 유공 등에게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 해지 통고를 하고 점진적으로 현대정유로부터의 구입량을 늘렸음
공정위 판단	수인가스가 시장의 특성상 협상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처를 변경할 경우 기존 거래처보다 더 많은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였고,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고 있는 현대정유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계약 해지 통고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함(공정위 1994. 9. 28.자 의결 제 1994-303 호)

나. 차별취급

-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을 차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에는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됨

o 가격차별

- **개념:**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 **대상행위**
 -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이 대상이 됨. 이때, 가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말함. 여기에는 할인율 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이 포함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야 함

- ✓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은 사업자 또는 소비자임

- 위법성의 판단기준

- ✓ 가격차별이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 ✓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행위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

- ①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②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가격차별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쟁사업자 배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③ 가격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 ④ 가격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등. 일회성의 가격차별은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수록 경쟁제한효과가 커질 수 있음

<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

- ①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 가격차별로 인해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② 차별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의 용이성 여부. 거래처 전환이 용이하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③ 가격차별 정도가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 ④ 가격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등. 일회성의 가격차별은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수록



경쟁제한효과가 커질 수 있음

✓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가격차별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① 가격차별이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경우
- ② 당해 가격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격할인을 받는 사업자의 이익, 경제적 효율성 증대 등)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③ 가격차별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안전지대:** 가격차별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대상으로 함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예 1)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 2)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의 상품·용역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용역과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래상대방(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해 가격 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취급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예 3)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매출액 규모, 원가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여 경쟁업체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 또는 열위에 서게 하는 행위
- 예 4)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구입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구입량과 관계없이 통상 적용하는 최대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자들과의 경쟁력 차이를 초래하는 행위



--

- 관련 사례

5 개 신용카드사들의 차별적 취급	
행위 사실	5 개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 시 가맹점의 매출액 규모, 수수료 수익, 매출처리 비용 부담 등 거래의 세부 내용에 따른 합리적 수수료율을 책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업종을 백화점과 할인점으로 구분하여 백화점에 현저히 불리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위 행위가 경쟁관계에 있는 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가맹점별로 매출액 규모등의 수수료율 결정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백화점과 할인점으로 구분하여 어느 일방 업종에 대해 현저히 유리 또는 불리하게 차별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공정위 2002. 11. 28. 자 의결 제 2002-341 호)

o 거래조건차별

- **개념:**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대상행위**
 - ✓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가 대상임. 이는 가격이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건(예: 수량할인 등)을 제외한 계약의 이행방법, 대금의 결제조건 등 거래내용면에서의 차별을 말함
 - ✓ 거래조건 차별은 특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비자에 대한 차별은 불포함. 다만, 차별대상 사업자가 엄격하게 특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자 또는 특정지역에 소재한 모든 사업자에 대한 차별도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봄
- **위법성의 판단기준**
 - ✓ 거래조건 차별이 당해 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 및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가격차별에 준하여 판단



- **안전지대의 설정:** 차별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심사면제 함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상품·용역 또는 수입품을 병행 취급하는 대리점(판매업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의 상품·용역의 제공시기, 배송회수, 결제방법 등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당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대리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관련 사례**

(주)골프존의 차별적 취급 행위	
행위 사실	피심인은 골프 시뮬레이터 등 골프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i) 가맹점에게는 계속하여 업그레이드 된 골프 시뮬레이터를 제공한 반면, (ii) 비가맹점에게는 2014 년 12 월 이후 업그레이드 된 골프 시뮬레이터를 제공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의 위 행위가 스크린골프장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경쟁요소의 공급에 있어서 비가맹점을 가맹점과 차별하여 비가맹점에게 이를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가맹점에 비하여 비가맹점의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비가맹점은 사업활동 곤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인 스크린골프장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도 인정되므로 거래조건의 차별이 인정된다고 봄(공정위 2018. 11. 15. 자 의결 제 2018-341 호)
법원 판단	스크린골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사업자(스크린골프 사업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 포함)는 골프존의 모든 거래상대방으로서 특정사업자가 아닌 불특정사업자에 불과한 점, 기존 제품과 신제품의 기능과 성능은 확연히 차이가 나므로 거래 방법, 대금 결제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 골프존과 기존 사업자간의 거래는 일회적·단발적이었고, 골프존이 모든 시스템을 계속 공급하기로 한 계약이 아닌 점, 골프존에게는 기존 사업자가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보호할 의무가 없는 점, 골프존에게 기존 제품보다 우수한 신제품을 출시하



	는 것이 금지돼있지 않으며, 신제품을 기존 제품과 같은 거래 조건이나 내용으로 공급할 의무가 없는 점, 골프존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매수를 유도했더라도 그것이 기존 사업자가 골프존에게 신제품을 판매하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사유가 되지 않는 점, 가맹본부가 신제품이나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비가맹점에 제공하는 것은 가맹사업계약의 위반으로서 골프존의 가맹사업이 정당하다면 신제품을 비가맹점에 공급할 의무를 골프존에게 지울 수 없는 점, 신제품이 출시된 지 2 년이 지났지만 골프존 사용자 중 75% 이상은 여전히 기존 제품을 사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8 누 76721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	---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개념:**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대상행위**
 -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의 차별행위가 대상
 - ✓ 차별의 상대방에는 소비자도 포함된다.
- **위법성의 판단기준**
 - ✓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
 - ✓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or 경제력 집중 우려 인정
 -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①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차별취급에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안전지대의 설정:** 유리한 취급을 받은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계열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 다만,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면제 대상이 되지 않음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예 1)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제품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단가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한 행위
예 2)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현금비율, 어음만기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
예 3)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동시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임가공단가를 비계열회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지급하는 행위
예 4)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보다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 관련 사례

(유)청기와의가스의 차별적 취급행위	
행위 사실	피심인은 LPG 를 정유사 등에서 공급받아 광주광역시내 LPG 소매상인 LPG 판매점에 LPG 를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계열회사인 청기와의가스에 대하여 비계열사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이 액화석유가스판매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인 (주)청기와의가스판매소에 대하여 비계열회사에 비해 공급가격을 현저히 낮게 공급함으로써 계열회사를 비계열회사에 비하여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공정위 2002. 10. 10. 자 의결 제 2002-152 호)

o 집단적 차별

- 개념: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대상행위**

- ✓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차별취급
- ✓ 부당한 공동행위와 달리 집단적 차별취급은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차별취급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음
- ✓ **실제로 차별행위가 행해져야 함**
- ✓ 차별취급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이 포함됨
- ✓ 차별취급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 따라서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위법성의 판단기준**

- ✓ 집단적 차별행위의 위법성은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 다만, 집단적 차별은 여러 사업자에 의해서 행해지므로 원칙적으로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비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봄

- **안전지대의 설정:** 집단적 차별을 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들의 연간매출액 합계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봄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예 1) 합리적 이유없이 복수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판매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예 2) 복수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덤핑판매를 하거나 온라인판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판매업자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다른 판매업자에 비하여 비싸게 책정함으로써 사업활동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고 다른 판매업자를 경쟁상 우위에 서게 하는 행위

다. 경쟁사업자 배제



-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킨 후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여 독점가격 책정이 가능해질 경우, 이는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 수준의 저하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금지됨
- 또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당해 시장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원재료의 상당량을 고가로 매입할 경우 이는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게 되므로 금지됨

○ 부당염매

- **개념:**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대상행위

- ✓ 부당염매에는 계속적 염매와 일시적 염매가 있음
- ✓ **계속적 염매**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공급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짐을 말함
- ✓ 공급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 여부는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함. 제조원가는 재료비, 인건비, 기타 제조경비,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산정. 매입원가는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계열회사관계나 제휴관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간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수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 **일시적 염매**란 일회 또는 단기간(1주일 이내)에 걸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짐을 의미. 현저히 낮은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속적 염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함
- ✓ 염매의 상대방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
- ✓ 부당염매는 유인염매, 할인특매와는 구별됨. **유인염매**란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덤핑판매를 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마진율을 종전과 같이 하거나 상향조정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함. 이는 판촉전략의 하나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와는 구별됨.
한편, **할인특매**는, (i) 할인특매는 공시 등으로 실시기간이 확정되는 등 기간이 확정적인 점 (ii) 할인특매는 경쟁사업자 배제의도 보다는 계절상품의 처리, 불경기



등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서 부당염매와 구별됨

- **위법성의 판단기준**

- ✓ 염매행위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란 당해 염매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함(실제로 배제될 필요없음)
- ✓ **계속적 염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봄.**
그러나,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① 당해 시장에 진입장벽(예: 규모의 경제, 사업영위 인허가, 거래비용 등)이 없어 계속적 염매로 인해 현재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될 수 있는 경우
 - ② 하자가 있는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 계절상품 및 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의 범위내에서 염매를 하는 경우
 - ③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여 염매로 판매하는 경우
 - ④ 신규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하여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걸쳐 염매를 하는 경우
 - ⑤ 파산이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염매를 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업자가 염매를 하는 경우
 - ⑥ 계속적 염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⑦ 계속적 염매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 **일시적 염매의 경우,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이 때,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① 염매행위를 하는 동기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는데 있는지 여부
 - ② 당해 염매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유지하기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거나 부도 등의 위기에 처할 우려 존부
 - ③ 당해 시장의 경쟁구조, 당해 시장에서의 사업자 수가 적고, 집중도가 높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클 수 있음



- ④ 진입장벽 유무 등, 규모의 경제·사업영위 인허가 등 요소가 없어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현재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되므로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없거나 미미하게 됨

✓ **일시적 염매의 경쟁사업자배제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① 하자가 있는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 계절상품 및 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의 범위 내에서 염매를 하는 경우
- ②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여 판매하는 경우
- ③ 신규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하여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걸쳐 염매를 하는 경우
- ④ 파산이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염매를 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업자가 염매를 하는 경우
- ⑤ 일시적 염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⑥ 일시적 염매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안전지대의 설정:**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심사면제 대상으로 함.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함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예 1) 규모의 경제 등 이유로 당해 시장에서의 신규진입이 단기간 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예 2)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가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예 3) 합리적 이유없이 공공기관 물품구매입찰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됨으로써 다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 **관련 사례**



경양가스(주)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행위 사실	가스충전업자인 경양가스가 경쟁사인 한려가스개발의 거래처 중 고성 지역 3개 거래처에 대하여 수개월간 구매가 및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프로판가스를 공급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약 8개월간 계속하여 채산성을 도외시한 저가격으로 프로판가스를 공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여 자기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았음 (공정위 1993. 8. 2. 자 의결 제 93-117 호)

○ 부당고가매입

- **개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대상행위**
 - ✓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구입하는 행위
 - ✓ **“통상 거래가격”**이라 함은 당시의 시장에서 사업자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수준을 말함. 인위적으로 제품이나 원재료의 품귀를 발생시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점되는 상품·용역의 물량이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므로, 고가매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
 - ✓ 고가매입의 상대방은 **사업자**에 한함
- **위법성의 판단기준**
 - ✓ 고가매입이 당해 상품·용역의 품귀를 가져옴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 이 때,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① 고가매입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②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수급이 원활한지 여부와 다른 대체재를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 대체재가 존재하더라도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



우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인정 가능

- ③ 고가매입으로 인해 경쟁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거나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 고가매입의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경쟁제한성)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① 사업자가 원재료 등의 품귀가능성에 대비하거나 제품의 안정적 생산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② 고가매입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③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안전지대의 설정:** 부당고가매입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함.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함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예 1) 합리적 이유없이 제품의 생산·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점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예 2)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용역을 통상 거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함으로써 사실상 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라. 부당고객유인

- 소비자가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사업자는 자기가 제공하는 상품·용역의 가격과 품질을 경쟁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그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것으로서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가 품질 좋고 저렴한 상품·용역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금지됨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개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함
- **대상행위**
 - ✓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는 행위
 - ✓ 이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현재의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의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 포함
 - ✓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표시·광고를 포함
 - ✓ 제공되는 이익에는 리베이트의 제공이나 가격할인 등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자사제품으로 교환하면서 덤으로 자사제품의 과다한 제공 등 적극적 이익제공과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비용의 감면, 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 의무나 설정료의 면제 등 소극적 이익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
 - ✓ 이익제공(제의)의 상대방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
- **위법성의 판단기준**
 - ✓ 이익제공 또는 제공제의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인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제의)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②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이익제공(제의)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가능성을 인정 가능
 - ✓ 이익제공(제의)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



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① 이익제공(제외)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부당한 이익제공(제외)을 함에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예 1)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제의를 하는 행위
예 2)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소개·의뢰·추천하는 자에게 리베이트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예 3) 사업자가 다른 특정사업자로부터 수주하거나 거래를 개시하기 위해 금품 등 음성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련 사례

경양가스(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행위 사실	현대정유는 유공 대리점들과의 대리점계약 체결 시 유공에 대한 채무변제용 자금 및 주유소·충전소 지원자금을 제공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제공된 채무변제용 자금 액수가 과다했고 지원자금을 지급일 이전에 지급했을 뿐 아니라 자금 지원 일수가 기존 정유사가 지원하는 장단기대여금의 평균(1994년 평균 84일)에 비하여 과다한 점(124일)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유공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것으로 봄 (공정위 1993. 8. 2. 자 의결 제 93-117 호)

o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개념:**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대상행위**

- ✓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
- ✓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현재의 고객 및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포함됨
- ✓ 기만 또는 위계는 표시나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이외의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함
- ✓ 상품·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한 행위가 대상
- ✓ **상품·용역의 내용**에는 품질, 규격, 제조일자, 원산지, 제조방법,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고, **거래조건**에는 가격, 수량, 지급조건 등이 포함되며,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는 국산품 혹은 수입품인지 여부, 신용조건, 업계에서의 지위, 거래은행, 명칭 등이 포함된다.
- ✓ 기만 또는 위계의 상대방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됨**

- **위법성의 판단기준**

- ✓ 기만 또는 위계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① 기만 또는 위계가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오인 또는 오인의 우려는 거래관계에 놓이게 될 고객의 관점에서 판단하되, 실제로 당해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를 발생시킬 필요 없으며, 객관적으로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함
 - ② 기만 또는 위계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 여부 등. 위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오인할 우려가 있더라도 그 결과 거래처를 전환하여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비방에 불과할 뿐 부당한 고객유인에는 해당되지 않음
-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그 속성상 **합리성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예 1)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사업자의 영업현황, 제품기능, 기술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비교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수주하는 행위
- 예 2) 경쟁사업자의 부도 임박·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의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관련 사례

한국오라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행위 사실	한국오라클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료시스템 구축사업에 소요되는 DBMS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 과정에서, 서울대병원 전산관계자 및 위 의료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업체 담당직원에게, 경쟁사에 불리한 내용만을 발췌 수록하는 한편, 구체적인 비교기준이나 객관적인 검증이나 출처표시 없이 경쟁사 제품에 자사 제품에는 존재하는 기능이 없다고 기재하거나 경쟁사 제품이 설치된 병원의 전산장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영업자료를 제공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이 경쟁사 상품이 자사 상품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으므로 경쟁사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였다고 판단함(공정위 1999. 9. 29. 자 의결 제 99-175 호)

o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개념: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대상행위
- ✓ 경쟁사업자와 고객의 거래를 방해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거래방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를 제외한 모든 수단이 포함
 - ✓ 거래방해에는 거래성립의 방해와 거래계속의 방해가 있음
 - ✓ 거래방해의 상대방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며, 고객에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포함됨. 이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현재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



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됨

- 위법성의 판단기준

- ✓ 거래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 ✓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① 거래방해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의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해의 동기나 의도, 방해 이후 고객의 거래처 내지 거래량의 변화추이,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와 경쟁의 정도 등을 고려함
 - ② 거래방해에 의해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중단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①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기타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예 1)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 예 2)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업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매장내의 외진 곳에 진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마. 거래강제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자사 직원 등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행위로서, 불합리한 수단으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도모하며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금지됨

o 끼워팔기

- **개념:**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



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대상행위**

- ✓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 이때 끼워팔기의 대상이 상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들이 시장에서 통상 별도로 거래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그 상업적 용도나 기능적 특성, 소비자 인식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통합과 기술혁신의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끼워팔기를 행하는 주체는 자기가 지정하는 제 3 자로 하여금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공급하게 할 수도 있으며, 상품·용역 이외에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됨
- ✓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포함

- **위법성의 판단기준**

- ✓ 끼워팔기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 이 때, 경쟁제한성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①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이 별개의 상품(또는 용역)인지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이 밀접불가분한 구성요소인지 여부, 통상적으로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짝지워 하나의 단위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지 여부,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별도로 구매하고자 하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 지 여부 등을 고려함
 - ② 끼워팔기 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또는 용역)시장에서 시장력(market power)이 있는지 여부
 - ③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등.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상품(또는 용역)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자유로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이때, '강제성'은 주된 상품(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자의 거래처 전환가능성이 적을수록 큰 것으로 보며, 다른 거래처에서 구입할 경우 주된 상품(또는 용역)의 거래거절이나 공급량감소 등 각종 불이익이 예상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거래처를 전환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강제성 인정 가능



- ④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만약 끼워팔기가 발생한 거래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쟁제한효과 여부로 판단
- ⑤ 끼워팔기로 인하여 종된 상품(또는 용역)시장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 끼워팔기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① 끼워팔기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관련 사례

갤러리아웨딩홀의 거래강제행위	
행위 사실	갤러리아웨딩홀은 1999년 3월 영업개시 이후 일요일 11:30 부터 14:00 까지 자기가 운영하는 예식장을 이용하려는 이용고객에게 예식장 대여조건으로 식당 이용을 강제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이 고객에게 예식장 대여조건으로 식당 이용을 강제하고 이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식당 이용율이 84%에 달했는데, 예식장 사용과 그 부대시설의 이용은 별개로 거래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며 고객은 예식장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였다고 판단함(공정위 2000. 8. 26. 자 의결 제 2000-221 호)

o 사원판매

- 대상행위

-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어떤 임직원이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영업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위법성의 판단기준



- ✓ 사원판매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 ✓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① 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하는지 여부

<강제성이 인정되는 예시>

- (i) 목표량 미달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가하거나, 판매목표 미달분을 억지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목표달성 여부를 고용관계의 존속이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됨
- (ii) 임직원에게 판매목표를 개인별로 설정한 후 이를 달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원이나 최고경영층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됨

<강제성이 부정되는 예시>

- (iii) 그러나, 목표량 달성시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임직원의 판단에 따라 목표량미달과 각종 이익 중에서 선택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 (iv) 임직원에게 불이익(사실상 불이익 포함)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회사 상품(또는 용역)의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단순촉구한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 ② 임직원에게 대한 구입(또는 판매)강제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잠재적 고객 포함)을 자기 또는 계열회사와 거래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
 - ③ 사원판매의 기간이나 목표량의 크기는 위법성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 사원판매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사원판매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함
 - ① 사원판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부도발생 등 사원판매를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예시 1)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최고경영자 또는 영업담당 이사에게 주기적으로 그 실적을 보고하고 공식적 계통을 통해 판매독려를 하는 경우

예시 2) 자신의 계열회사에게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일정량을 판매하도록 할당하고 당해 계열회사는 임직원에게 협력업체에 대해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o 기타의 거래강제

- 대상행위

- ✓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기타의 거래강제는 행위자와 상대방간 거래관계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나, 거래상 지위남용(구입강제)의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간 거래관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됨
- ✓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됨

- 위법성의 판단기준

- ✓ 거래강제 행위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 ✓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 ② 당해 불이익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 ③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 상대방이 행위자의 요구사항을 자유로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강제성 여부를 판단함.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봄
- ✓ 기타의 거래강제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기타의 거래강제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
 - ① 기타의 거래강제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



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기타의 거래강제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예 1)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예 2) 사업자가 자신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신의 상품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임을 고지하여 사실상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바. 거래상지위 남용

- 금지 이유

- ✓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됨
- ✓ 다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을 사업자간 거래관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거래상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 민사행위 등과의 구별

- ✓ 거래개시 단계: 만약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거래할 사업자를 여러 사업자중 선택할 수 있었고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개시하였고 계약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 거래계속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불이익을 가한다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 ✓ 또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담보권 설정·



해지, 지체상금 등)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 거래상 지위 여부

✓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할 것

- ① 계속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고착화(lock-in) 현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우월적 지위에 있게 됨
- ② 계속적 거래관계 여부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함

✓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함

- ①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적 거래관계라 하더라도 거래처 등을 변경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어려움
- ② 통상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

✓ 계속적 거래관계 및 거래의존도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관계(예시)

- 예 1)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제조업체와 부품납품업체, 지역독점적 공공시설 관리업자와 시설임차사업자, 독점적 공공사업자와 계약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 등간 거래관계
- 예 2)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업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특정사업자와 제조 또는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예 3)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가 장기간 계속되고, 거래관계 유지에 대규모투자가 소요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전환할 경우 설비전환이 곤란하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

✓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i)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



는 지 여부, (ii)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iii)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함

○ 구입강제

- 대상행위

-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 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봄
- ✓ 구입강제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됨. 다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도 포함
- ✓ 구입이 강제되는 상품 또는 용역은 사업자 자신의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자의 것일 수도 있음

- 위법성의 판단기준: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 참조

- 법 위반이 주로 문제되는 행위(예시)

- 예 1) 합리적 이유없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대리점에게 재고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예 2) 합리적 이유없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 예 3)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예 4) 합리적 이유없이 도·소매업자(또는 대리점)에게 과다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량을 도·소매업자(또는 대리점)가 구입



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 관련 사례

서울도시가스(주)의 구입강제	
행위 사실	도시가스공급업체인 서울도시가스(주)는 자신과 '고객센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각 권역별 고객센터로 하여금 고객센터의 경영상황 및 의사와 관계없이 선물의 구입처, 종류 등을 일괄적으로 지정하여 직원 선물을 구입하도록 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서울도시가스(주)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함 (공정위 2014. 5. 8. 자 의결 제 2014-105 호)

o 이익제공강요

- 대상행위

- ✓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경제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됨
- ✓ 계열회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됨
- ✓ 이익제공강요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됨
- ✓ 이익제공 강요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됨. 다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도 포함됨

- 위법성의 판단기준: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 참조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예 1) 합리적 이유없이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예 2)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 판매목표강제

- 대상행위

-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 대상상품 또는 용역은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어야 함
- ✓ 판매목표강제의 상대방은 사업자에 한정됨

- 위법성의 판단기준

- ✓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 참조
- ✓ 거래내용의 공정성 판단 시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함.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목표가 과도한 수준인지, 실제 거래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
|---|
| <p>예 1)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회원이나 가입자의 수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수수료 지급의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p> <p>예 2)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이 제품을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추후 대금지급 시 공제하는 행위</p> <p>예 3)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사에서 대리점을 대신하여 강제로 미판매 물량을 덤핑 판매한 후 발생손실을 대리점의 부담으로 하는 행위</p> <p>예 4) 거래상대방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단가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의 판매량이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p> |
|---|

○ 불이익제공

- 대상행위

-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



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함

-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 ✓ 불이익제공은 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 가능
- ✓ 다만,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의해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 거래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됨. 다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도 포함됨

- **위법성의 판단기준:**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 참조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예 1) 거래조건 설정·변경

-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갑'이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계약 유효기간 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행위
- 계약서상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계약단가가 고가라는 지적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계약기간 중에 자기의 점포 장기임차인에게 광고선전비의 부과기준을 일방적으로 상향조정한 행위

예 2) 불이익 제공



-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한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물가변동을 인한 공사비인상 요인을 불인정하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부지급하는 행위
-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상 지위남용성 거래거절)

- 관련 사례

4 개 정유사 등의 불이익 제공	
행위 사실	피심인들은 2006. 10.경부터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주문하는 경우 확정되지 않은 제품가격을 고지하고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공급일로부터 하루 내지 일주일의 경과한 이후에 다른 정유사의 제품가격을 고려하여 이미 공급된 제품의 판매가격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뒤, 매월 말에 주유소와 제품공급 당시 주유소에 통보한 가격과 제품공급 이후에 확정된 가격의 차액을 정산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5 개 정유사들이 주유소에서 제품을 주문받으면 대략적인 가격을 고지한 후 출하 시점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확정하여 월말 정산하였는데, 이로써 주유소들이 주문 시 제품 가격을 알 수 없어 주유소 영업활동 및 구매처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격 경쟁이 회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이익 제공 행위로 보아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2009. 2. 3. 자 의결 제 2009-050 호)
법원 판단	(고등법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A 정유사가 거래 주유소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시정명령 위법함 ① 사후 정산 시 정산가격을 할증하는 경우(=정유사가 통보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유소에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 정유사의 거래 주유소들은 계속적인 공급계약에 따른 특성상 가격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매량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던 점 ③ A 정유사의 거래 주유소들은 전속거래로 인해 가격을 비교하여 구매처를 전환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았던 점 ④ 주유소간의 경쟁은 지역적으로 또는 주변 상권별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A 정유사가 통상 경쟁사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최종 가격을 결정한 결과, 결국 원고 거래 주유소들로서는 통상 다른 경쟁사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경질유제품을 구매하였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



	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 원심 판단 인정 (서울고법 2010. 10. 21. 선고 2009 누 6959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 두 25909 판결)
--	---

o 경영간섭

- 대상행위

- ✓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 ✓ 거래상대방에는 소비자 불포함

- 위법성의 판단기준

- ✓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 참조
- ✓ 의결권의 행사나 채권회수를 위한 간섭으로서 법적 근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 또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예 1) 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광고시 자기와 사전합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예 2)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 아무런 곤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의 임원선임 및 기타 경영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
- 예 3) 상가를 임대하거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품목이나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사. 구속조건부 거래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유통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



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됨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지역이나 거래처를 제한함으로써 당해 지역 또는 거래처에 대한 독점력을 부여하여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면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금지됨

○ 배타조건부거래

- 대상행위

- ✓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①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라 함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함
- ② 배타조건의 내용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함. 또한 경쟁사업자와의 기존거래를 중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규거래 개시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됨
- ③ 배타조건의 형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경쟁사업자와 거래 시에는 불이익이 수반됨으로써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됨. 위반 시 거래 중단이나 공급량 감소 등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당해 배타조건이 사실상 구속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음

- ✓ 거래상대방에는 소비자 불포함

- 위법성의 판단기준

- ✓ 배타조건부거래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타조건부거래가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을 통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①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②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 ③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 행위자가 선도기업이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커질 수 있음
 - ④ 배타조건부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 배타조건부거래 상대방의 숫자가 많고 그 시장점유율이 높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커질 수 있음
 - ⑤ 배타조건부거래 실시기간. 실시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나 장기인 경우에는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됨
 - ⑥ 배타조건부거래의 의도 및 목적. 배타조건부거래가 사업초기에 시장에서의 신규진입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낮을 수 있음
 - ⑦ 배타조건부거래가 거래지역 제한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경쟁제한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동시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행위자의 시장지위 강화효과가 커질 수 있음
- ✓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①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성, 전문성 등으로 인해 A/S 활동 등에 있어 배타조건부거래가 필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등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③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유통업체의 무임승차(특정 유통업체가 판매촉진노력을 투입하여 창출한 수요에 대하여 다른 유통업체가 그에 편승하여 별도의 판매촉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판로를 확보하는 행위) 방지, 판매 및 조달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
- **안전지대의 설정:** 배타조건부거래를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함.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심사 면제함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예 1) 경쟁사업자가 유통망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대리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



로써 관련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예 2) 경쟁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대량구매 등 수요측면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예 3)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업무제휴를 하면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중복제휴를 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경쟁사업자가 타 업무제휴 상대방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 예 4) 구입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구입선과 거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생산(또는 판매)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예 5)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거래처인 방문판매업자들에 대해 경쟁사업자 제품의 취급증가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판매를 전업으로 하여 줄 것과 경쟁사업자 제품을 취급시에는 자신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예 6)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병행수입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총판에게 병행수입업자와 병행수입품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도매 및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행위
- 예 7) 석유정제업자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석유제품전량구매를 강제하는 등 석유판매업자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관련 사례

4 개 정유사 등의 구속조건부거래	
행위 사실	4 개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유소 소요제품 전량을 자신으로부터 공급받고 이를 위반 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의 수단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주유소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 및 정유사들 간의 경쟁을 제한하였으며 수입사 등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을 뿐 아



	나라 별도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배타조건부거래로 판단함(공정위 2009. 2. 3. 자 의결 제 2009-050 호)
법원 판단	고등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을 긍정하였으며 대법원은 일부 논거를 다르다고 인정하였으나 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서울고법 2010. 10. 21. 선고 2009 누 6959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 두 25909 판결)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대상행위

- ✓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구속하는 행위
- ✓ 판매지역 구속에는 그 구속의 정도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판매책임지역을 설정할 뿐 그 지역외 판매를 허용하는 책임지역제(또는 판매거점제), 판매지역을 한정하지만 복수판매자를 허용하는 개방 지역제한제(open territory),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할당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제재함으로써 이를 강제하는 엄격한 지역제한제(closed territory)로 구분 가능
- ✓ 거래상대방의 영업대상 또는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도 대상이 됨
- ✓ 상기의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거래지역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
- ✓ 구속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에는 소비자 불포함
- ✓ 거래지역 제한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가격 이외의 조건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별됨
- ✓ 사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위탁매매인에게 판매대상 등을 지정하는 상법상 위탁매매관계는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 위법성의 판단기준

-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 ✓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와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형량한 후 판단함
 - ①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책임지역제 또는 개방 지역제한제와 지역제한을 위반하여도 제재가 없는 등 구속성이 엄격하지 않은 지역제한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됨. 지역제한을 위반하였을 때 제재가 가해지는 등 구



속성이 엄격한 지역제한제는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므로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음. 또한 거래상대방 제한의 경우도 거래지역제한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함

- ②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업자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간 브랜드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지역 제한 및 거래상대방 제한은 유통업자들의 판촉활동에 대한 무임승차 경향 방지와 판촉서비스 증대 등을 통해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음
 - ③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행위자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경쟁사업자의 수 및 시장점유율이 낮을수록 브랜드 내 경쟁제한 효과가 유발되는 정도가 커질 수 있음
 - ④ 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병행하여 사용될 경우 경쟁제한 효과가 클 수 있음
 - ⑤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
- ✓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 부인 가능
- ① 상기 요인 이외에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의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안전지대의 설정:** 행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심사를 면제함.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함.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예 1)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지정 또는 할당하고, 그 구역 밖에서의 판촉 내지 판매활동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예 2)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을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예 3) 제조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매업자에 대해 그 판매
선인 소매업자를 한정하여 지정하고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특정 도매업자에게
서만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 **관련 사례**

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의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사실	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은 정압기 판매업자들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의 정압기 판매지역은 자신의 계열회사인 대한도시가스(주)의 도시가스 공급권역내로 하며 정압기 판매 3사는 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의 판매지역에서 별도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정압기 판매 3사가 계약이나 합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압기 판매 3사의 제품구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정함
공정위 판단	피심인의 행위는 정압기 판매업자들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지정 지역의 소비자에게 정압기를 직매할 수 없어 초과가격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경쟁을 제한했으므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한 것으로 판단함 (공정위 2002. 12. 23. 자 의결 제 2002-356 호)

아. 사업활동 방해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거나 거래처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할 경우 가격과 질, 서비스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됨

o 기술의 부당이용

- **개념:**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대상행위**
 -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이용하는 행위
 - ✓ 이 때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음. 또한, '다른 사업자의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영업에 관한 사항 등을 의미함

- **위법성의 판단기준**

- ✓ 기술의 부당이용이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 ✓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① 기술이용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기술이용의 목적 및 의도, 당해 기술의 특수성, 특허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통상적인 업계 관행 등이 고려됨
 - ②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 기술의 부당이용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o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개념:**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대상행위**
 -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유인·채용하는 행위
 - ✓ 이 때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음
- **위법성의 판단기준**
 -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이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 ✓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① 인력 유인·채용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인력유인 채용의 목적 및 의도, 해당 인력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력유인·채용에 사용된 수단, 통상적인 업계의 관행,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됨



- ②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예 1)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를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 예 2)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목적으로 핵심인력을 자기의 사업활동에는 필요하지도 않는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o 거래처 이전방해

- 개념: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대상행위
 - ✓ 거래상대방의 거래처이전을 방해하는 행위
 - ✓ 이때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음
- 위법성의 판단기준
 - ✓ 거래처 이전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 ✓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① 거래처 이전방해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거래처 이전방해의 목적·의도, 거래처 이전방해에 사용된 수단,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이전될 거래처가 사업영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됨
 - ②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 거래처 이전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거래처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 처리하거나 담보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

o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 **대상행위**

- ✓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대상
- ✓ 방해의 수단을 묻지 않으며, 자기의 능률이나 효율성과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함
- ✓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음

- **위법성의 판단기준**

- ✓ 사업활동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 ✓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①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활동방해의 수단, 당해 수단을 사용한 목적 및 의도,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됨
 - ②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 사업활동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2.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법 45 조 1 항 9 호)

o **의의**

-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요건

[지원행위]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거나(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심사지침에서 같다)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 지원행위 판단기준인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함
- 거래유형 및 유형별 정상가격 판단기준

구 분	내 용	정상가격/지원행위 판단기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자금(가지급금·대여금 등) 거래와 거래조건이, ①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②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③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함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채재산권 등 자산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해당 자산(유가증권·부동산·무채재산권 등)·상품·용역 거래와 ①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②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③ 만일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함 *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5 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 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	· 해당 인력이 지원객체에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 - 지원객체가 지원주체 또는 해당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실제지급급여"라 한다)이 해당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이하 "정상급여"라 한다)보다 상당히 적은 때에 성립함 · 해당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 양자에게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 - 그 양자에 대한 근로제공 및 대가 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의 금액에서 해당 인력의 지원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위의 정상급여로 간주함 - 그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에서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객체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위의 정상급여로 간주함
부당한 거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 등	· 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래 단계 추가 (통행세)	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거나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 -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이례적인 거래 형태인지 여부, 지원 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지원 주체에게 불리한 거래 방식인지 여부, 지원 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 시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	---	--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따라서 지원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이러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부당성 인정 예시>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기업집단 외부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진입하기 힘들어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지원객체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사업기반이 공고하게 되는 반면, 해당 기업집단 외부의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

o 관련 사례



지에스칼텍스(주)의 부당지원행위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03. 8. 1.부터 2004. 3. 31.까지 스마트로부터 보너스카드 중계 서비스 제공대가로 중계 건당 30 원(총 816,796 천원)을 지급한 행위 및 2004. 4. 1.부터 2005. 12. 31.까지 스마트로부터보너스카드 중계서비스 및 프로모션 서비스 등의 제공 대가로 중계 건당 30 원(총 3,896,184 천원)을 지급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의 스마트의 영업 및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된 점,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인 「엘지」또는「지에스」의 경제력 집중이 강화된 점, 피심인이 스마트를 지원할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점, VAN 서비스시장의 시장구조를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점 등을 근거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공정위 2009. 7. 13. 자 의결 제 2009-159 호)

SK 기업집단 계열회사(7 개)의 부당지원행위	
행위 사실	피심인들(SK 텔레콤, SK 건설, SK 증권,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네트워크, SK 카메라엔컴퍼니. 이하 '7 개사')은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등 IT 서비스 위탁거래 시 계열회사인 SKC&C 가 일률적으로 정한 단가 등 SKC&C 에게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을 그대로 수용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7 개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피심인 SKT 가 SKC&C 에게 유지보수비를 지급한 행위는 SKC&C 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함 한편, 7 개사의 행위로 인하여 대규모 물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를 지원객체인 SKC&C 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킨 점, 기업집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SKC&C 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SKC&C 의 주가상승 및 신용평가등급 결정의 주된 요인은 기업집단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매출 성장에 기인한다는 점, SKC&C 로 하여금 SI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획득·유지하도록 한 점, 중소기업들이 SI 시장으로 신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한 점, 동일인의 기업집단 SK 에 대한 소유권 강화, 경영권 강화, SKC&C 주식가치 상승 등 총수일가의 부를 축적하게 해준 측면으로 볼 때 경제력을 집중시켰고,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가능성 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부당성을 인정함 (공정위 2012. 9. 3. 자 의결 제 2012-227 호)
법원 판단	고등법원은 ① 인건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일괄적 OS 거래에 있어서 2008 년 이후 고시단가보다 낮은 금액이 인건비 단가의 정상가격이 되었다거나 7 개사가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인건비를 SKC&C 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보고, ②



	유지보수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SK 텔레콤이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여 SKC&C 에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정위 처분을 취소함.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시를 긍정함(서울고등법원 2014. 5. 14. 선고 2012 누 30440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 두 8568 판결)
--	---

3. 위반 시 제재 사항 (법 49 조, 50 조, 124 조, 125 조)

구 분	내 용
시정조치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 조항의 삭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과 징 금	(불공정거래행위) 매출액의 4% 이내. 단, 매출액 없거나 산정 곤란 시 10 억원 이내 (부당지원행위) 당해 사업자의 직전 3 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10% 이내, 매출액 없거나 산정 곤란 시 40 억원 이내
벌칙(고발)	(불공정거래행위)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부당지원행위)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억원 이하의 벌금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Q&A

【질의 1】

계약 자유의 원칙 또는 사적 자치란 무엇인가요?

【응답 1】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계약상대방, 계약내용, 계약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는 근대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계약이 사생활을 형성해 나가는데 주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계약자유는 사적 자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거래거절과 관련해서 보면 사업자가 일



정한 판단 하에 특정인과의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상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만 불공정한 방법으로서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거절을 위한 합리적인 이유나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질의 2】

대리점을 개설한지 1 년이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영업 정책의 변경을 이유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응답 2】

사업자가 경영정책 및 방침의 변경에 따른 사업통합·축소·폐지의 수단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해지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대리점에 해당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 계약해지 전에 거래상대방에게 새로운 거래처 선택의 기회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취하는 것이 위법한 거래거절 또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의 3】

대리점의 영업실적부진을 이유로 거래를 중단할 수 있나요?

【응답 3】

대리점에게 계약상 해지 사유가 아닌 매출부진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이거나, 계약의 중도 해지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대리점과 거래를 계속하지 않아야 할 합리적 이유(계약상 의무 위반,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신뢰관계의 중대한 훼손 등)가 있다면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 4】

회사 소요제품을 입찰을 통해 외부업체로부터 구입하면서, 응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한 거래거절이 되나요?

【응답 4】



사업자는 자율적인 판단으로 거래처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와 거래할 상대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응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응찰자격조건이 특정 거래상대방을 배제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정해지는 경우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질의 5】

행정관청에 LPG 등 가스공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이 되나요?

【응답 5】

LPG 등 가스공급에 대한 거절이 부당한 거래거절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절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지나치게 낮은 응찰의 요구나 상관행상 수용하기 곤란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거래거절을 하는 경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제한적 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할 소지가 많습니다.

【질의 6】

비계열사인 "A"사로부터 수년간 물품공급을 받아오다가 계열사인 "B"사가 동종품질을 생산함에 따라 "A"사로부터의 공급을 줄이고 "B"사로부터 공급을 늘린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나요?

【응답 6】

가격, 품질 등 거래조건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때 비계열사와 거래하는 것이 경영상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A"로부터 물품구입을 현저하게 줄이거나 전면 중단하는 것은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또는 거래거절(또는 부당지원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 계열회사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 없이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를 타사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게 취급한 것만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열회사간 거래 시에 거래조건의 설정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질의 7】

경쟁사보다 제품을 싸게 파는 행위는 부당염매가 되나요?

【응답 7】



제품공급가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으로서 제품을 경쟁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였다고 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업자가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품에 하자 내지 재고의 처리를 위해 제한된 물량의 범위 내에서 판매를 하는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행위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닙니다.

【질의 8】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조달청 등에 입찰, 납품하는 행위는 부당염매에 해당하나요?

【응답 8】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납품한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염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당염매가 되기 위해서는 현저히 낮은 대가,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며, 당해 상품의 성질, 수급상황, 경쟁자가 대항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경쟁사업자 배제우려는 염매의 목적, 염매상품의 양, 염매기간, 행위자의 사업규모, 시장에 있어서의 지위, 염매로 영향을 받은 사업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 9】

정부기관으로부터 1 원 입찰행위도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후 1 원입찰을 한 경우는 공정거래법 제 116 조의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가 되나요?

【응답 9】

공정거래법 제 116 조의 법령에 따른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 법령에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고,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법률에서 1 원 입찰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거나 소관행정청이 해당 입찰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부기관의 유권해석만으로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 10】

판촉계획의 일환으로 거래처에 현금이나 상품권, 해외여행 등을 제공하는 것도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나요?

【응답 10】

해당 경제상 이익의 정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문제가 됩니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인지 여부는 경제상 이익의 정도, 판매마진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익제공에 관한 당해 업계의 정상적인 상관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질의 11】

인터넷 쇼핑몰 구매자에게 구매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나요?

【응답 11】

쇼핑몰 구매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행위는 사업자가 자기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 즉, 경품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한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부당고객유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12】

거래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채권이나 직원의 인사문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거래강제가 되나요?

【응답 12】

거래강제의 대표적인 경우는 끼워팔기이지만, 거래와의 관련성이 없더라도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반하여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불이익을 제시하며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판매행위는 거래강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 13】

거래강제에서 강제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응답 13】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한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요구 불이행 시의 불이익이 계약이나 내규 등에 정해져 있는 경우, 행위자가 불이익을 가한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아니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행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강제로 구입한 상품을 다시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였거나 재고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행위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거래거절 내지는 중단, 기타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강제행위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질의 14】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서 구입강제와 거래강제로서의 사원판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응답 14】

양자는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거래상대방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구입강제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사원판매는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판매를 강제할 경우에는 사원판매가, 대리점 등 거래처를 상대로 판매를 강제한 경우에는 구입강제가 적용됩니다.

【질의 15】

당사가 가스제품판매 대리점 등에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나요?

【응답 15】

사업자가 경영성과의 제고를 위해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독려하거나 나아가 목표 달성의 유인책으로 인센티브(수수료 등 정당한 수입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를 정하는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이러한 판매목표 달성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미달성 시 불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목표달성을 강요할 때에는 거래상지위남용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질의 16】

대리점등과 계약체결 시 수취인을 당사로 하는 지급기일 공란의 약속어음(백지어음)을 수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응답 16】

담보용 백지어음 수취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등 다른 담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백지어음을 수취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질의 17】

거래상 지위남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나요?

【응답 17】

과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우월적 지위남용”이라는 제목으로 규정하고 있었기에 행위자의 상대방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필요하다고 해석되었고, 그 위법성 판단에는 ① 행위자의 거래상 지위의 우월성 ② 행위의 억압성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현재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제목을 바꾸었으므로 반드시 ‘우월적’ 지위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 심사지침과 현행 심사지침 간 실무상 법 적용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의 18】

수입·정유사와 LPG 제품 판매대리점간 계약에서 대리점은 당해 수입·정유사의 제품만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나요?

【응답 18】



이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로 그 위법성은 인정되나, LPG 등의 수입계약이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되어 있고, 취급과정에서도 용기에 타사제품과 혼합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 등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1년간의 배타조건부거래는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질의 19】

복수상표표시제하에서 충전소가 특정 수입·정유사의 LPG 제품만을 취급하는 계약은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나요?

【응답 19】

수입·정유사와 충전소는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과 거래조건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정유사가 충전소에게 배타조건부거래를 요구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공정위의 명확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나, 배타조건거래로 인해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등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0】

배타조건부거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응답 20】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①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②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③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 순위, ④ 배타조건부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 ⑤ 배타조건부거래 실시기간, ⑥ 배타조건부거래의 의도 및 목적, ⑦ 배타조건부거래가 거래지역 제한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경쟁제한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타조건부거래가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을 통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합니다.

【질의 21】

보다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노동자를 스카우트하는 것이 불공정거래행위라면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적 실현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요?



【응답 21】

보다 높은 보수를 제공하여 노동자를 스카우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자유로운 경쟁질서 내에서는 어느 기업도 자신의 피용자 내지 인적 설비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스카우트 경쟁 또한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자 스카우트가 경쟁사업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노동자에 대한 기만과 결부되거나, 다른 경쟁자의 영업비밀을 염탐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 스카우트가 신규 사용주 사이의 협정에 위배되는 경우, 시장에서 경쟁사를 몰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사업자 소속의 노동자를 대량으로 스카우트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등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VIII. 기 타

1.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법 51 조)

○ 사업자단체

-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 (예: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 동종 업종의 사업자일 필요는 없으나, 단순한 친목, 종교, 학술, 연구, 사회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구 분	내 용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수의 제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사업활동방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장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사항 (법 52 조, 53 조, 124 조, 125 조)

구 분	내 용
시정조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과 징 금	사업자단체: 10 억원 이내 위반행위 참가 사업자: 법 51 조 1 호(부당공동행위) 위반: 매출액의 20% 이내(매출액 없거나 산정 곤란 시 40 억원 이내) 법 51 조 2 호 - 4 호 위반: 매출액의 10%이내(매출액 없거나 산정 곤란 시 20 억원 이내)
벌칙(고발)	법 51 조 1 호(부당공동행위) 위반: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억원 이하의 벌금 법 51 조 3 호 위반: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법 46 조)

가. 의의

-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나. 요건

○ 거래가격의 지정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사업자에게 판매할 가격, 즉 재판매가격을 제시하여야 함
- 이러한 거래가격에는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 혹은 가격 범위의 지정이 모두 포함됨
- 최저가격 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는 가격인상을 막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됨

<최고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경우>

- 1) 시장지배력이 없는 사업자가 유통업자와 전속적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통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격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 2) 제조업자가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소수이고 유통업체간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경쟁사에 비해 자사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o 거래가격의 강제성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판매가격이 '강제'되어야 함. 강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재판매가격이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사업자에게 구속성이 있어야 함
- 명백한 강제나 구속이 부과될 필요는 없고 따르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제약이나 경제적 불이익이 가해지는 정도면 충분하며, 재판매가격의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명시적, 묵시적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도 포함함
- 재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지, 경고하거나, 차별취급을 하거나 모니터링 하는 경우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가격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도 순수한 모니터링만이 아니라 가격 지정과 병행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

- 통상 브랜드제품 등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격은 구속성 없이 사업자의 단순한 희망이나 의사의 전달로 그치고, 그 준수를 강요하거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없음. 다만,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하도록 규약이나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다. 적용제외(법 46 조 단서)

- 공정거래법은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 또한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할 수 있음

라. 위반 시 제재 사항 (법 49 조, 50 조)

구 분	내 용
시정조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과 징 금	매출액의 4% 이내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 10 억원 이내)



Q&A

【질의 1】

공급업자가 단순히 가격준수의무만을 규정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나요?

【응답 1】

계약에는 통상적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의 제재조치에 대한 조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격준수의무가 계약에 정해질 경우, 위와 같은 통상적인 계약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관련 조항이 계약에 존재하지 않는다고거나 계약에 그와 같은 제재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가격준수의무 위반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 2】

자기명의이나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을 매매하는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가 지정한 가격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응답 2】

재판매가격유지금지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위탁매매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실질적인 소유권의 귀속주체'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취급에 따르는 '실질적인 위험의 부담주체'가 위탁자인지 또는 수탁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① 폐기상품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 ② 상품소유권이 대리점에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③ 본사가 대리점에 대한 상품 공급시 외상매출로 처리하고, 가맹대리점에 대한 매출시 가맹점계정에 매출 처리하는 경우, ④ 대리점에서 판매되지 않은 재고품에 대한 반품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위탁판매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① 대리점 계약서에 출고된 상품의 판매에 관한 일체의 비용 및 손실을 대리점의 부담으로 규정한 경우 또는 ② 계약서에 매장상품의 화재 및 도난에 대비하여 대리점이 일정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품의 보관·관리책임 및 소유권을 전적으로 대리



점에게 맡기는 경우 등과 같이 수탁자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보유·취급 등에 따른 멸실·훼손의 책임을 지거나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위탁판매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의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구속할 때 어느 정도의 구속성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응답 3】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준수를 강요하거나, 위반에 대하여 제재수단(계약해지, 제품공급 중단 등)을 강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재판매가격유지에 해당하는 행위들입니다.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합의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의무가 상대방에게 인정되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지시나 통지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실효성 확보수단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요건인 구속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개관

o 의의

- 대리점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물량을 밀어내거나, 영업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
- 대리점법은 하도급법과 함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공정거래법 45 조 1항 6 호)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이에 우선하여 적용됨. 대리점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 대리점법은 공정위의 최우선 과제인 ‘갑질 근절’의 대표적 분야로, 2018. 11. 대리점거래과를 신설, 이후 매년 업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발견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2020. 11. 발표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 개 업종에 대하여 이루어짐. 특히 석유유통의 경우, 공정위는 ① 판매목표 미달성 시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판매목표 강제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고, ② 다른 사업자의 제품 취급 금지를 전제로 공급하는(32.9%)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도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밝힘

o 체제

계약서 작성의무 (사전통제)	계약서 제공의무
	계약서 보관의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사후통제)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
	보복조치



2. 대리점법 적용 대상

- 대리점법은 대리점거래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명시함

대리점거래	① 공급업자(대리점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②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③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
공급업자 (대리점본사)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용역을 대리점에 공급하는 사업자
대리점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 ※ 특정 공급업자와 거래하는 전속대리점뿐만 아니라 여러 공급업자와 거래하는 소위 '혼합판매점'도 대리점법상 대리점에 해당함

법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	공급업자(대리점본사)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법/자본시장법(금융투자법) 적용 거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거래성격, 대리점 보호필요성 감안 대리점 거래에서 제외 필요 있는 것)

3. 계약서 작성 의무

○ 의의

- 공급업자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즉시 대리점에게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 계약서 반영 필수 사항

-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 상품대금(대리점→공급업자)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위탁한 업무의 범위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위탁판매거래의 경우)
- 수수료(공급업자→대리점)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위탁판매 대가에 관한 사항 (위탁판매거래의 경우)

o 계약서 제공의무 및 보관의무

[제공의무]

- 계약서에는 계약서 반영 필수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하며, 공급업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고 대리점과 자신이 서명·기명날인한 대리점계약서를 서면으로(전자문서 포함) 대리점에게 제공하여야 함

[보관의무]

-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함

o 유의사항

- 물품 공급이 개시되었음에도 대리점주가 날인을 하지 않아 계약서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공급업자의 서면 미교부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 계약서 작성 당시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별도의 문서로 정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별도의 서면을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계약 해지 시에도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함에 유의

4.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행위

o 의의

- 대리점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서는 대리점법이 우선하여 적용됨에 따라 대리점법에 의해 총 7가지의 불공정행위가 금지됨
- 그 내용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과 거의 유사하지만, 대리점거래에 맞게 주문내역의 확인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공정거래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임

- 대리점법의 규율형식상 “부당성”요건이 없기 때문에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정당화 사유 등의 항변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구 분	내 용
구입강제행위 (밀어내기)	구입강제행위란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다음 행위가 이에 해당함 ①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②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③ 그 밖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제행위란, 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다음 행위가 이에 해당함 ①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② 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대리점이 고용한 임직원을 공급업자의 사업장 또는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장 등의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④ 기부금, 협찬금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⑤ 그 밖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위로서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란, 아래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함 ① 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③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 그 밖에 대리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란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다음 행위가 이에 해당함 ① 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계약 기간 중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조건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행위 ③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④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대리점과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⑤ 대리점거래 계약서 상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⑥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나 비품이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대리점이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 ⑦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⑧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드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행위



	⑨ 그 밖에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경영활동 간섭 행위	경영활동 간섭 행위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 다음 행위가 이에 해당함 ① 대리점이 임직원 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임직원 등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 또는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 ②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③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행하여야 하는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서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함
보복조치 금지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대리점에게 거래의 정지, 물량의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5. 위반에 대한 조치

○ 공정위 조치 유형 및 내용

구 분	내 용
시정조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과징금	5 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벌칙 및 과태료	2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 벌금 및 각 위반 행위별 과태료



○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 공급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급업자가 부담함

[징벌적 (3 배) 손해배상 제도 도입]

- 공급업자가 구입강제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를 하거나 보복조치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손해의 3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짐

[법원의 손해액 인정]

-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Q&A

【질의 1】

계약서 기재사항 중, 실제 거래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

【응답 1】

의무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별도로 기재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장려금 제도가 없는 형태의 대리점 거래인 경우, “판매장려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발생 방지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질의 2】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행위는 언제나 금지되나요?

【응답 2】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판매목표 미달성 시,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 3】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삭감하는 행위도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될 수 있나요?

【응답 3】

판매장려금은 인센티브 성격을 지닌 것이므로, 판매실적에 따라서 판매장려금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장려금이 사실상 대리점의 주요한 수익원이어서 정상적인 유통 마진을 대체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판매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법한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령 (하도급법 · 약관규제법 · 표시광고법)



I.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또는 ‘법’)

1. 하도급법의 주요 규제 내용

- 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가공포함)·수리, 건설·용역위탁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하여 납품·인도·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행위
- 하도급법은 크게 ①원사업자 의무사항, ②원사업자 금지사항, ③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의무사항으로 구분됨

【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유형 】

구 분	내 용
원사업자 의무사항	-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법 3 조)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변경 시 관련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고 보존의무 (서면에는 ① 하도급대금 등 하도급계약 내용, ②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요건·방법·절차, ③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내용 등을 반드시 기재)·
	- 하도급대금 등 지급의무(법 6 조, 법 13 조, 법 15 조) 특정 기일 이전(납품 후 60 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후 15 일)에 하도급대금/선급금/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기일을 넘기거나,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할 의무
	- 기타 의무사항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법 7 조),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법 9 조),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증의무(법 13 조의 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법 16 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법 16 조의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시의무 (법 13 조의 3)
원사업자 금지사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지 부당한 방법을 통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 (법 4 조)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금지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위탁



	을 취소하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 (법 8 조, 법 10 조)
	- 감액금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외에는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 (법 11 조)
	- 부당한 대물변제금지 일정한 사유(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가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법 17 조)
	- 기타 금지사항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법 5 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법 12 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12 조의 2),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법 12 조의 3),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법 18 조), 보복조치 금지 (법 19 조), 탈법행위 금지(법 20 조) 등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 발주자 하도급법상 다음 사유 발생 시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법 14 조)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 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수급사업자 서류보존의무(법 3 조), 건설공사 계약이행보증의무 (법 13 조의 2), 신의칙준수(법 21 조 1 항),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협조거



	부 의무(법 21 조 2 항)
--	------------------

2. 위반 시 제재 사항 (법 20 조, 법 25 조, 법 30 조, 법 30 조의 2 등)

구 분	내 용
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실질적인 법 적용 면탈 행위 금지
시정조치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등
공 탁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시정조치 의무를 면할 수 있음
과 징 금	하도급대금의 2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 기타 법 위반유형별 과태료 부과



Q&A

【질의 1】

실제 하도급계약서와 다른 발주처 통보용 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법 적용 대상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요?

【응답 1】

원칙적으로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 합의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면을 작성교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이한 계약서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합의내용에 입각한 계약서가 유효한 하도급계약서로 인정되며, 하도급법 적용대상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 실제 시공과 관련하여 작성되지 않고 다른 목적(예컨대, 저가 하도급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발주자 통보용으로 작성)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합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하도급계약으로 보지 않음

【질의 2】

전자적인 형태의 서류보존도 인정되나요?

【응답 2】

서류보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서류를 포함(영 6 조 1 항)하고 있으므로, 전자적인 형태의 서류보존도 인정됩니다.

【질의 3】

도급대금을 수령하지 못해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응답 3】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에 관계없이 하도급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다면 60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I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규제법’ 또는 ‘법’)

1. 제도 일반

○ 약관규제법

-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및 소비자 보호

○ 약관

-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법 2 조)

○ 약관작성 및 설명의무(법 3 조)

-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함(1 항)
-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함(2 항)
- 사업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외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3 항)
- 설명의무(위 2 항 및 3 항) 미준수 시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법 4 조)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함

○ 약관 해석의 원칙(법 5 조)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함

2. 불공정 약관의 유형 및 효과



- 약관규제법은 개별약관의 불공정성 판정기준으로 일반조항과 개별금지조항 두 가지를 두고 있음
- 일반조항으로 신의성실원칙 (법 6 조)
- 개별금지조항으로 ①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 ②손해배상의 예정, ③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④채무의 이행, ⑤고객의 권익보호, ⑥의사표시의 의제, ⑦대리인의 책임 가중, ⑧소송상권리의 제한

【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

구 분	내 용
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	① 사업자·이행보조자·피용자의 고의·중대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 배제 ②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 제한, 사업자 부담 위험의 고객 이전 ③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 배제·제한,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 가중,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나 품질·성능표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책임 배제·제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① 고객에게 법률에 의한 해제권·해지권 배제·제한 ②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제권·해지권 부여 또는 법률에 의한 해제권·해지권 행사요건 완화로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 ③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④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 ⑤ 계속적인 채무관계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기간을 부당하게 단기·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
채무의 이행	①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②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고객의 권익보호	① 법률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



	유없이 배제·제한 ②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 ③ 고객이 제 3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 ④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 누설허용 조항
의사표시의 의제	①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 기간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②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요건을 부당하게 엄격하게 제한 ③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④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한 기한을 정하는 조항
대리인의 책임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의 의무 불이행 시 대리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
소송상 권리의 제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 금지, 재판관할의 합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

- (효과) 불공정한 약관은 당연 무효이며,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함. 다만, 유효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

3. 위반 시 제재 사항 (법 17 조의 2, 법 32 조, 법 34 조)

구 분	내 용
시정조치	당해 불공정 약관 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
벌칙 및 과태료	2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 벌금 및 각 위반 행위별 과태료



Q&A

【질의 1】

약관도 계약을 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면 당사자간의 자유에 따라 이루어지면 될 텐데, 약관에 대한 각종 규제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응답 1】

약관은 대량거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체결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권리나 이익은 가능한 한 확대하면서 자기가 부담해야 할 거래상의 위험이나 부담은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 기한 약관의 불공정성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의 2】

약관이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것입니다. 이때 “다수의” 상대방이란 어느 정도의 고객을 말하는 것입니까? 2 인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계약서형식도 약관에 해당하나요?

【응답 2】

“다수”는 반드시 불특정다수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가 다수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합니다. 약관이 대량거래에 추상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것이라는 성격을 감안하여, 약관이 규율하고자 하는 거래의 종류에 맞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질의 3】

대리점과 약관형식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대리점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응답 3】

명시·설명의무 위반은 사업자가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효과를 가질 뿐이며, 동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해지사유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질의 4】

구두로 개별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향후 동 약정의 존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약관 내용에 “이와 다른 개별약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려고 합니다. 이는 가능한가요?

【응답 4】

“이와 다른 개별약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서면요구조항이라고 합니다. 개별약정은 구두로도 가능하기에 “구두에 의한 합의는 모두 무효”라고 하는 조항을 삽입한다면 이는 개별약정의 우선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즉 서면요구조항이 있더라도 구두에 의한 개별약정이 우선합니다.

【질의 5】

약관규제법상 약관으로서는 무효인 내용이 개별약정의 형태로 계약에 포함되는 경우 당해 개별약정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응답 5】

이런 경우 그 개별약정은 민법의 일반원칙(민법 제 104 조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질의 6】

작성자불리의 원칙은 약관해석상의 모든 의문을 기업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닌가요?

【응답 6】

작성자불리의 원칙은 다른 방법에 의해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는 경우 최후에 작성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약관 조항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서 누구라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질의 7】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거래 관행상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관조항을 약관에 삽입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나요?

【응답 7】

어떤 약관조항이 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당해 조항이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상관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한계 내에서 형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질의 8】

고객이 예상하기 곤란한 의외조항의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응답 8】

계약명칭은 대리점 계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고용계약인 경우, 요리강습 계약을 했는데 요리기구 매매 목적인 경우 등 위장된 계약이 거래에서 빈번히 발견됩니다. 이는 탈법, 탈세, 고객기만을 목적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로 됩니다.

【질의 9】

약관의 불공정성 심사 시에 고려되는 사항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응답 9】

첫째,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 판단하여야 합니다. 둘째, 약관이 사용된 거래유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어떤 조항은 한 거래유형에서는 공정한 것이나, 다른 거래유형에서는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거래의 목적물이 독과점업체의 물건인지 생필품인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사업자에 대한 예측성의 존부가 판단됩니다.

【질의 10】

이행보조자란 무엇인가요?

【응답 10】

친권자, 후견인,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 법률이 정한 대리인을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며, 채무자의 채무이행의 보조자로서 사용되는 자를 협의의 이행보조자라고 하는데, 법정대리인과 좁은 의미의 이행보조자를 합하여 이행보조자라고 합니다. 고용, 위임, 도급 등 노무계약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호의관계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의 11】)



어느 정도의 금액 또는 연체이자율이 약관법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응답 11】

이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거래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손해배상액으로 임차보증금의 30%를 예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의 12】

즉시 해지가 가능한 경우와 일정기간의 이행최고가 필요한 해제·해지의 경우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응답 12】

계약의 해제·해지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향후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있는 채무자가 다시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다면 동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 즉,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때, 경매 등 강제집행을 받은 때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업무처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정상적 업무처리로 손해를 가져오는 것만으로 사유로는 즉시 해지는 불가하며 일정기간의 최고는 필요합니다.

【질의 13】

사회통념상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약관조항의 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응답 13】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 이행방법 등을 변경하더라도 고객이 그에 동의한다는 조항, 사업자에 의한 약관의 변경에 대한 고객의 승낙을 의제하는 약관조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약관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계약의 체결과 동일한 방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관변경의 합의를 한 경우에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질의 14】

분쟁발생시 재판관할의 합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응답 14】

어느 지역에서 소송이 진행되느냐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수행에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거주지나 사업장소에서 소송을 수행하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때에 출석하는 등 소송수행상의 편의점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를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보는 이유는 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하면서 사업자에게만 유리하도록 재판관할 합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III.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법’ 또는 ‘법’)

1. 제도 일반

- 표시광고법의 목적: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

※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그 상품 등의 용기·포장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한 표지판에 쓰거나 붙인 문자나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

※ 광고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법 3 조)

-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해서는 아니 됨.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 유형 】

구 분	내 용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법 3 조 1 항 1 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법 3 조 1 항 2 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 등이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법 3 조 1 항 3 호)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법 3 조 1 항 4 호)

2. 분야별 표시·광고 고시 및 지침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표시광고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

○ 부동산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분양 또는 임대하는 부동산의 시행자, 시공사, 분양업종, 입주조건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동산의 분양 및 임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을 제시

○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나 상품등의 원재료, 성분, 품질, 성능, 제조방법, 가격, 보증, 기타의 거래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행하는 표시·광고 중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의 유형을 제시

○ 금융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이자율, 수익률, 이자, 수익 산정방법, 대출자격 등 국내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을 제시

○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각종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획득·의미·인정 가치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을 제시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광고주가 아닌 소비자, 전문가, 유명인 등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추천·보증 형태의 광고의 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을 제시

○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표시·광고로 소비자에게 전달된 주장의 내용, 적용범위 등이 조건 등에 의하여 제한될 때, 그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

3. 위반 시 제재사항(법 7 조, 법 8 조, 법 9 조, 법 17 조)

구 분	내 용
시정조치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임시중지명령	사안에 따라 표시·광고행위 일시 중지 명령 가능
과 징 금	매출액의 2% 이내
벌 칙	2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밀엄수위반: 2 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 태 료	조사방해: 사업자: 2 억원 이하, 임직원 등 5 천만원 이하 그 외 유형: 사업자: 1 억원 이하, 임직원: 1 천만원 이하



Q&A

【질의 1】

허위·과장 표시·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응답 1】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시장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시·광고의 부당성 판단에서는 소비자의 오인성이 기준이 됩니다. 이때 허위·과장성 여부는 자연과학적 자료보다는 소비자의 사회통념을 기초로 판단된다는 것이 공정위와 학설의 입장입니다.

【질의 2】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가요?

【응답 2】

부당한 표시·광고는 일단 표시·광고 자체가 유포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경쟁사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표시·광고의 부당성 판단에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공정위도 피심인의 고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도 없으며 피심인이 선의임을 주장해도 부당한 표시·광고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질의 3】

경쟁사업자가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올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 공정위 심결이전에 부당한 광고를 임시 중지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나요?

【응답 3】

공정위는 표시·광고행위의 부당성이 명백하게 의심되고 당해 광고행위로 인해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임시중지명령)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 8 조). 그러나 표시·광고법상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광고행위의 임시중지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I.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1. 공정거래위원회 성격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 시장구조의 개선으로 경쟁적인 시장환경의 조성
 - 거래형태의 개선을 통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2.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 사무처로 구성되고, 사무처는 본부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로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총 9인)
- 위원회 회의는 전원회의(9명)와 소회의(상임위원 1인 포함 3인)로 나누어 운영

	전원회의	소회의
의장	위원장	상임위원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소관사항	- 법규 등의 제·개정 - 이의신청의 재결 -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	- 일반사건 - 승인·인정·인가사항 - 집행정지의 결정 - 과태료 - 관계기관에 협조의뢰 사항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약관법상 시정요청)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II. 주요내용

1. 사건처리 절차



① 인지 단계

- 법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한 조사 가능 (법 80 조)
- 위반 혐의는 직권인지 원칙, 신고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
- 신고 접수 시 예비조사 실시 후 사건화 여부를 결정

② 조사 · 심사 단계

- 사건 심사 착수 보고(사건번호, 사건명 부여) 후 조사권을 발동, 본 조사 실시
- 조사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시정명



령,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조치의견을 제시

-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

③ 심의 · 의결 단계

- 심의는 위원회가 피심인과 심사관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대심 구조하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피심인 등에 대한 본인확인, 심사관의 심사보고, 피심인의 의견진술, 심사관의 의견진술, 위원들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참고인 등의 심의 참가, 심사관의 조치의견 발표, 피심인의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
- 합의는 심의가 종료된 후 위원들만 참석하여 비공개로 위법여부, 조치내용 등에 대해 논의 · 합의하는 과정 (법 65 조)

④ 의결 결과 통지

- 합의 결과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하여 당해 심사관이 의결서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로 이로써 피심인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 (법 68 조)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유형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재심사명령,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 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이 있음

3. 공정한 심결을 위한 주요 제도

○ 사전 의견청취절차 제도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안건의 경우 등을 대상으로 정식심의에 앞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진행 하에 주요 쟁점에 대한 피심인과 심사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

○ 심의 속개제

심의를 신중하게 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심의를 한번에 끝내지



않고 다음 기일에 심의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심의분리제

공동행위와 같은 위반행위 건에 대한 심의시 특정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과 별도로 심의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경쟁사에 공개될 우려가 있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의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제도

○ 출석 시차제

해당 안건의 심의시작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의시작 시간까지 출석하도록 하여 피심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 등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당 안건의 심의시간을 예측하여 그 시간에 맞도록 출석하도록 하여 피심인들의 편의를 보장하려는 제도

4. 불복절차

○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 공정위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
- 공정위는 60 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30 일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 (법 96 조)
- 시정조치 명령을 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가 가능 (법 97 조)

○ 행정소송

- 공정위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법 99 조, 100 조)
-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